

제438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8월24일(월)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국방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가. 국방부 소관

(10시00분 개의)

○소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차관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시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결산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검혀히 수용해서 우리 국방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과 8월 25일 양일 간 우리 위원회 소관 국방부 등 3개 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8월 31일 월요일 오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결산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서면질의를 토대로 정리된 심사 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만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국방부 소관

(10시03분)

○소위원장 김병주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부터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국방부 소관 결산심사 안건은 총 60건입니다. 그에 더하여 부대의견도 3건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 한 14건 정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내용을 몇 건 묶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한 3건이나 4건…… 유사한 것들은 묶어서, 여기 보니까 1, 2, 3이 장교인건비, 장교인건비, 부서관인건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묶어서 보고해 주시고 토의합시다.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1번부터 3번까지는 군 인건비 관련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사이버전문사관 양성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방부는 사이버전문사관 양성을 위하여 군-대학 간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40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임관 및 복무 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관자 대비 장기복무율도 23년부터 25년까지를 보면 11%, 0%, 19%에 불과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는 사이버전문사관의 임관 및 장기복무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학금 환수 제재 외에 보상체계 개선과 경력관리 지원 등 실효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천하람 위원께서는 시정을 그다음에 강선영 위원님과 임종득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국방부의 직할부대 지휘관 구성을 군별로 균형 있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은 육군, 해군, 공군의 비율을 각각 3 대 1 대 1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5년 말 기준으로 보면 직할부대의 부대장 보직은 군무원을 제외한 모두 육군 소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국방부 직할부대장의 인사운영 방침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천하람 위원께서는 시정을, 강선영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사관인건비, 특히 기본급에 대한 과다 편성 문제입니다.

부사관인건비 중 기본급의 이·전용 등 감액 규모가 최근 3년간 아래의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산정한 예상 인력운영 수준과 실제 운영실적 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사관인건비 기본급의 최근 집행 추이 및 부사관의 실제 인력운영률을 면밀히 반영하고 인건비가 타 사업의 재원으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관행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천하람 위원께서는 시정을, 강선영 위원님과 김병기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강선영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다만 국방부 시정요구 유형을 마찬가지로 강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립니다.

3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강선영 위원님과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차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장교인건비, 인건비 항목부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반회계 총괄 부분에서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전용이 너무 많습니다. 차관님, 국방부가 2025회계연도에 총 3146억 7400만 원 규모를 이용했고요. 3691억 원 정도를 전용했습니다. 그다음에 4529억 원을 내역 변경, 2269억 원을 세목 조정을 했는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2025회계연도 단일 연도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3000억 원이었는데 24년도 5200억, 25년도 6800억으로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적정 예산 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가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편성 목적의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나중에, 만약에 이·전용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이·전용한 것이 긍정적이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걸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서관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과다 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부서관 운용률이 2023년도 91.8%인데 25년도 83.8%로 지속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된 내용을 다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남은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감액된 예산이 대부분 급여정책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배상금, 재난지원금 등 타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부서관 인건비가 감소된 이유는 부서관 인원이 줄어서다. 그러면 그 예산은 급여정책 프로그램 내에서 이용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포천 오폐사고 주민지원금에도 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부서관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은 왜 그런지 차관님과 저희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관련 없는 프로그램에서 타 재원으로 반복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하더라도 그 목 안에서 조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각종 배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는 데 문제는 없지만 그 가용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되도록 하고 좀 더 예측된 예산운용이 되도록 저희들도 편성을 노력하고 또 배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 수준으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도록 그 부분도 같이 재정당국과 적극 협력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말씀해 주세요.

○柳榮夏 위원 차관님, 문제 지적보다 사이버전문사관 이게 지금 문제는 취지는 좋은데 결국은 복무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柳榮夏 위원 저는 그 이유가 군에서 분석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처음에 장학금 받고 왔다가 그 장학금을 토해내더라도 다른 직역에 가서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고 자기 개발이 되니까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柳榮夏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은 재래전과 전혀 다른 형태의 전쟁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주 뛰어난 사이버 요원들이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정보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문제를 똑같이 지적을 해 드렸는데 군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장학금 환수라는 그런 것보다 이 사람들을, 좋은 애들을 데려올 때는 기본 월급체계나 그런 걸 좀 뛰어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해서 가지고 좋은 인력 자원을 확보하는 게 저는 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강선영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부서관 인건비 이 부분은 저는 국방부에서 약간의 고의

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지금 많은 인력들의 추계를 이런 식으로 편차가 나도록 할 정도로 저는 무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군의 능력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게 말하기 그렇지만 저는 통상 예비비 형태로 돈을 쟁여 놓다고 보고 있어요, 서로 불편한 진실이지만.

어느 정도 편차, 1~2% 정도 편차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예산에서 5% 이상 편차가 난다는 것, 그렇게 인력 추계가 안 되면 앞으로 나중에 병력 손실이나 유사시에 우리가 그 추계를, 어떻게 군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령 피우는 예산은 이제 앞으로는 안 된다. 아마 이렇게 계속되면 이번엔 예산심의 들어가서 이런 부분은 상당 액수가 감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사이버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세요. 계급체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오는 거지 기본 계급체계에 맞춰서 조금씩 수당 더 붙이면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지적 잘 알겠습니다. 사이버 분야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군의 급여체계를 뛰어넘는, 판교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주고 그 복무 기간에 역량이 더 성장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국가 급여체계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더 고민하고 위원님 찾아뵙고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말씀하시지요.

○황명선 위원 황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국방부 여러분들한테 성의 없는 결산에 대한 태도를 먼저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심사 때는 책자 들고 보좌진부터 의원들 만나러 의원실 뛰어다니잖아요, 곧 있을 텐데. 결산할 때는 안 오시더라고요. 제 방만 안 왔나요? 그래서 안 되지요. 왜냐하면 편성에는 사활을 걸면서 집행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이런 태도처럼 보인다는 얘기에요.

○강선영 위원 지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래서 지적을 지금 이렇게 하니깐 앞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정작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아서 수억 원, 때에 따라서는 수십억 원 이렇게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의 역량 부족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국민의 혈세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국방예산은 정말 단 1원도, 10원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국방의 안보와 우리 국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의 있는 결산 태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위원님 주신 따끔한 지적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첫 번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시정과 제도개선을 하시겠다는데 한 가지 근본적으로 저도 여러분들한테 시정과 제도개선을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임관 포기자의 실태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화해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볼 때는 민간과의 처우 격차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부대 내의 보직과 근무 여건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감안해서 시정과 제도개선
선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와 관련해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육해공군이 3 대 1 대 1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국방부 직할 부대장 보직, 군무원을 제외하면 해군, 공군 또 해병
대는 여기 전혀 돼 있지가 않아요. 이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를 했지요. 제기가
되었던 문제인데 왜 계속 이렇게 법적 원칙을 위반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누구입니까,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 부분이 뭘 게을리하거나 태만히 한다기보다는 정원 구조 설계
가 돼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양성된 인재,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딱히 누구 한 사람이 태만히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인력 양성
부터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명선 위원 더 이상 이야기하면 불편해질 것 같아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알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차기 인사부터는 해군, 해병대, 공군 이렇게 등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부사관 충원을 저하가 구조화된 상황입니다. 추계 방
식을 우리가 인원 정원이 아니라 최근의 실질 충원을 기준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추계 방식을 계속 인원 정원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과 제
도개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1·2·3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사이버전문사관 제도 활용 제고 필요는 국방부가 수용하되 제도개선으로 수용, 그
다음에 국방부 직할부대장 군별 균형편성 필요는 제도개선 수용, 부사관 기본급 과다 편
성 관행 시정 필요는 제도개선 수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과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기본급식 관련 내용입니다. 일괄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번입니다.

군급식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입찰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을 보시면 국방부는 20년 이후 군급식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부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구성 비율이 낮고 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나 공개 수준도 달리하고 있어 개
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부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술 70, 가격 30을 하고 있는데 중앙관서의 장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군의 평가 방식은 국방부장관의 세부기준 없이 기술강조형 입찰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는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안서 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 및 범위, 평가 항목 및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군급식 민간위탁사업의 합리적인 조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군급식 민간위탁사업의 계약 규모를 보면 5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입찰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 대형 계약 체결에 따른 각 부대의 행정적 수단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는 현재 부대 조달로 추진되고 있는 군급식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조달전문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수요 부대의 조달 필요성과 계약 체결의 행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달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항은 직영급식의 만족도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군급식은 민간위탁급식과 직영급식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위탁 비율은 각 군마다 상이합니다. 최근 3년간 군급식 만족도 조사를 보면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간위탁급식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5점 만점 기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는 군급식 혁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직영급식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군별·지역별 급식 여건 격차를 해소해 나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7번 사항은 군급식 식재료 경쟁입찰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군급식 식재료 경쟁입찰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상향 요구하였는데 국방부는 아직까지 경쟁입찰 비율을 30%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유는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유추가 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는 군급식 식재료의 경쟁입찰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역시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4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5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6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7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수용이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은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이걸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제도개선 요구한 것들을 수용하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 위원님.

○강선영 위원 그러면 차관님 5번, 군급식 민간위탁사업 조달전문기관을 통한 조달 계약. 그러면 현재는 각 부대가 자체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부대 조달을 재정관리단에서,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조달사업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식을 재정관리단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도개선을 수용하신다는 것은 부대 조달로 되어 있는 것을 국군재정관리단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을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국군재정관리단이나 조달청에 위탁해서 하는 방안 등을 수용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부대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는 해당 부대에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서 이것을 훈령이나 급식 방침 등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6번, 직영급식 품질 개선인데요. 군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시면 직영과 위탁급식이 있을 때 직영급식은 2023년 3.34에서 3.81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요. 위탁급식은 2023년 3.95에서 4.22로 갔다 3.97, 변화가 크게 없는데 차관님도 군 생활 해 보셨겠지만 사실은 직영급식이 지휘관들이 번거롭고 하긴 하나 오히려 급식의 질이나 만족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강선영 위원 단 관리하기가 위탁급식보다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계속 직영으로 하기에는 병력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위생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나 저는 여기에서 직영급식 품질 개선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직영급식을 지속하는 거는 실제로 제한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급식을 했을 때 위탁급식을 하는 업체의 수익 구조에서 시설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이 직영급식에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위탁급식 안에 원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위탁급식자 중에 부대 내에 들어와서 위탁급식하는 업자와의 계약에서 시설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원재료비로 더 많이, 급식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영급식의 품질 개선보다는…… 추세는, 위탁급식의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줘서 오히려 진정하게 들어가는 급식비가 부수적으로 진짜 급식의 질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직영급식 품질개선 지속 추진이라고는 했으나 이 급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위탁급식을 하는 대형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노란봉투법 때문에 급식 하청으로 들어오는 회사와 그 회사들이 급식 하는, 그 회사가 아닌 원청인…… 국방부를 상대로 어떻게 또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제한 사항도 고려해서 제가 볼 때 이 위탁급식에 대한 질을 어떻게 제도 안에서 좀 수준을 높일 것인가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좀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께서 급식 관련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게 동일한 금액인데 직영급식은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재료비에 다 들어가는데 위탁급식을 하다 보면 그 기업의 직원들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일정 부분의 이익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비가 좀 떨어지거나 국산 비율이 떨어진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력 구조나 사회 변화 때문에 민영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올해 1일 식대를 민간 위탁급식하는 데는 2000원 인상하는 것을 정부안에 담아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국방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걸로 보여지고.

천하람 위원님께서도 논산 훈련소 가서 훈련을 같이 하면서 밥이 참 맛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가 다 민영입니다. 직영이 아니라 위탁급식인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하향으로 꺾어졌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유 위원님.

○柳榮夏 위원 차관님, 4번 보면 결국 각 부대별로 기준이 다 상이한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통일된 기준을 먼저 마련해서 예하대로 내려보내고 예하대에 특이한 사정이 있으면 부대 간 재량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이 있더라도 일단 일응의 통일된 기준을 국방부에서 마련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개인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5번에서도 무조건 중앙 조달이 맞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차관께서 어떻게 전부 이거를 제도개선을 다 마련한다 이러지만 부대마다 특성이 다 다를 겁니다. 다른데 저희가 이런 기준은 제시하더라도 그 부대의 특성에 맞게끔 기준을 재량을 줘야지 무조건 이거는 전부 통일된 기준만 마련해서 그게 다 옳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 현행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도 정말로 고쳐야 될 부분만 핀셋으로 고쳐내면 되는 거지 이쪽에서 의견을 준다고 그래서 그걸 무조건 수용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번에 보면 전방 격오지 부대는 위탁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 아니겠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柳榮夏 위원 문제는 저는 이쪽에, 특히 GP나 이런 데서 사병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직영을 해서 급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국방부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부대 특성상 똑같은 일률적으로 급식비가 배정되더라도 이런 격오지에는 조금 더 부식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있도록 그렇게 차등을 하는 것도,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너무 기준 기준해서 일률적으로 평등을 맞추는 건 오히려 저는 불평등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식재료 이거 경쟁입찰이 맞다고는 봐요. 그런데 한편 또 뒤집어 보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공급받아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비율을 낮추는 게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농·축협, 수협을 통해서 저희가 유사시에도 확보될 수 있어야지 이걸 무조건 비율만 맞춰서 줬다가 만약에 그걸 못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의견을 드리더라도 정부에서 그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시고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대안을 좀 주세요. 지금 보니까 차관께서 국회에서 지적하면 다 그냥 수용하겠다는, 수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현행 제도보다 우리가 드리는 제도개선 의견이 저는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무조건 국회에서 요구한다고 했다고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군의 입장도 있고 군의 특성도 있을 겁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이쪽을 설득하거나 본인들의 얘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저는 아울러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많은 안이 남았잖아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번 관련해서 통일된 기준은 후반기에 연구용역을 해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서 훈련 또는 급식 방침에 반영해서 내릴 예정입니다. 5번 관련해서 중앙이 맞느냐, 지방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이게 효율성과 어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 여기 다 하게 됩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지방 균형이나 특성을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균형점을 찾는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번, 격오지 관련해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해공군은 굉장히 비율이 높은 반면에 육군은 굉장히 낮습니다. 또 GP나 GOP 이런 경계 부대는 신병 훈련소 같은 데는 증식비가 있어서 훨씬 급식의 질이 더 좋게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7번, 식자재 경쟁 이 부분은 가령 국회 농해수위 같은 데는 퍼센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아마 요구하실 거고 지역구가 농촌이신 위원님들도 강하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반면에 여러 가지 좀 안정적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정부 내에서도 농림축산부 같은 경우는 퍼센트 유지를 또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농·수·축협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정부의 의사결정, 국회, 국민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황명선 위원님.

○황명선 위원 유명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좀 덧붙여서 수의계약, 농·축협 또 수협까지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경쟁 조달로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제 지역이 논산·계룡이어서 다 국방의 도시입니다. 국방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훈련소도 있고 항공학교도 있고 3군 본부도 있고 국방대학교도 있고. 지금 이렇게 기조가 변화되다 보니까 결국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지금 현재 군의 인

력체계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따른 급식의 질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겠지요.

다만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 내에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다. 서울·수도권 같은 경우에 크게 경기북부 이외에는, 군이 있는 도시가 아닌 경우는 예외겠지만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있는 도시에 농업인들하고 축사인들하고 서로 이렇게 다 상생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시장 할 때도 저희 논산의 축협에서 우리 훈련소에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민간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농협과 축협, 관내에 군부대가 상존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농축산물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기술평가를 하든 무슨 평가를 하든 간에 반드시 이러한 지역 내의 농축산물을 쓸 수 있는 이 기술평가에 항목들이 들어가야 지역 내의 농축산물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명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제도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공개경쟁입찰이 또 중요하지는 않아요. 군부대가 있는 지역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축협이 긴급할 때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의 농축산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여지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군부대가 있는 도시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지역 내의 농축산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술평가나 이렇게 할 때 반드시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 평가표를 만들고 할 때 그런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검토하지 말고 직접 한번 잘 설계를 해 주셔야 돼요.

○소위원장 김병주 윤희하 위원님이나 황명선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기해 주셨는데, 항상 근 20년 동안 논쟁이 됐던 것이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축협 또는 식자재를 지역에서 써야 되겠다 하는 원칙을 한 20년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다가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의 식재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가 법을 좀 바꾸어서 병사들의 그것을 우선한다라고 문구에 넣었거든요, 제가 또.

그래서 이것은 2개 다 수용이 필요해요. 여기서 논의되는 모든 본질은 병사들, 장병들의 먹는 질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1순위가.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다음 2순위가 이제 이왕이면 지역 것을 해 줘서 상생구조로 가야 된다고, 통상 보면 저도 지역 의원이지만 지역 의원들은 1순위를 지역 것을 써 주고 병사들의 그것은 그러라 해서……

제가 군생활을 39년 동안 하면서 제일 불만스러운 것이 무슨 파동이 나면, 예를 들어 정어리가 많이 잡히면 정어리만 한 달 내내 먹고 그다음에 닭에 대한 조류독감이 남부지

역에 돌면 북부지역에 있는 닭은 전부 다 군이 먹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제도개선 대부분 보니까 수용하신다고 했는데 제도개선하되 이것 한다고 무조건 제도개선하지 말고 이런 고려 요소를 국방부는 기준을 1번이, 법에도 나와 있어요. 병사들의 그것이 1번이다.

2번은 이왕이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 지역의 업체라든가 지역의 식자재를 해 주는 것이 좋다. 여기에 계약할 때도 중앙을 통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 연고가 없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 단위 연고가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강원도 지역의 군부대는 최소한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아예 해 버리니까 대개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군생활 할 때도. 그런 고려 요소를 조금 더 군장병에 우선권을 두고 상생구조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보니까 4번·5번·6번·7번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되 제도개선 수용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방부가 융통성 있게 장병들의 삶을 위해서 우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번까지요. 1·4·5·6·7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번 과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이어서 8번부터 10번까지는 증·특식 등 군식량 관련 내용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번입니다.

증·특식 사업의 적정규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증·특식 사업 예산액은 2022년에 1576억 원에서 2025년에 1164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90% 수준인데 이는 매년 10% 내외의 비율로 예산의 감액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25년의 증·특식 사업 조정 감액의 대부분이 기본급식비 사업으로 조정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본급식비 사업 예산규모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방부는 증·특식 사업 예산을 적정규모로 감액함과 더불어 적정규모의 기본급식비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번 사항은 특수식량에 대한 적정 비축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식량 사업은 전시 등 유사시 대비 비상 급식품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5년도 특수식량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100%에 가까운데도 비축률은 81.7%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비축 목표와 보유량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방부는 현 수준의 비축 목표의 적정성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적정목표 설정 및 예산 확보를 통하여 특수식량 비축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 10번입니다.

10번 사항은 전투식량 유형 중 복원형의 적정 비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투식량 22형과 관련하여 복원형은 발열형 대비 중량·부피·단가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12월 기준 비축 목표 달성률은 발열형이 100%인 반면 복원형은 4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동안 군의 비축 조달이 발열형에만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방부는 복원-22형 전투식량 비축이 발열형에 비해 심각하게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비축 인가 기준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조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금년도부터 예산 집행과 조달계획 조정을 통해 복원형 구매 물량을 조기에 확대 집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8번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9번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0번 시정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저부터 말씀을……

○소위원장 김병주 강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증식비 관련해서 집행률이 예산액 대비 90% 내외로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게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사실은 제가 지금 국방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병사들의 급식비 단가들을 높이려고 하는데 거꾸로 제가 운용할 때 생각해 보면 부다마다 잔반 처리비, 연간 그게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국방부 입장에서는 급식비를 올리면 병사들이 식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리의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계속 민간 조리사에 대한 논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이제 병사들의 기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못 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물자보급지시안에 기본급식, 1종 급식에 각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품목에 대한 기준량을 언제 변경시키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1종에서 특히 쌀, 이것 함부로 줄이기 어려운 것은 압니다, 농민들 때문에. 그렇긴 한데 밥을 해 보면 그 기준량을 다 하면 밥은 다 남습니다. 당연히 그러고 된장류 다 품목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증·특식비에 기호를 찍 늘려 가지고, 기본급식비를 증액이다 감액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싶은 음식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증·특식비가 오히려 집행률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호를 줌, 병사들의 입맛에 대해서 말하기 참 어려운 것 다 압니다, 이갑수 장군님. 알지만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답변을 못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국방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저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잘 받들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유 위원님.

○柳榮夏 위원 차관님, 9번 조금 여쭙볼게요.

이게 목표 자체가 처음부터 과다하게 설정된 건지 아니면 조달계획이 미흡된 건지 한번 꼭 분석을 좀 하셔서 대응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에서 예측하는 예측 수요하고 실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국방부, 우리 군이 어떤 작전 개념을 할 때도 수처에 이런 오차 범위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되게 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차관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10번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저희가 군대생활 할 때는 사실 전투식량 이런 것을 먹어 보지 못해서 제가 감이 없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발열형은 100%가 다 군에서 확보가 됐는데 오히려 단가도 싸고 경쟁력도 있고 군이 유사시에 더 활용이 높은 복원형에 대해서 이렇게 확보가 미흡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가 기준을 재검토하라고 하신 말씀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제도개선 내용을 수용해서 인가 기준을 재검토해서 그래서 비축 목표를 적정 수준에 합리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쉽게 말하면 발열형은 우리 등산 갈 때 하는 것처럼 당기면 열나서 데워서 먹는 거고 복원형은 물 부어서 불려서 먹는 건데, 그게 가격도 싸고 한데 그게 지금 제대로 조달이 안 됐던 부분은 24년도에 참기름 규격 문제가 좀 있어서 24년도에 1년 동안 조달 자체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변경해서 작년부터 조달을 시작해서 이것은 한 업체에서, 마트에서 왕창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정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지나고 내년쯤 되면 적정 수준으로 채워질 걸로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차관님, 급식에서 피복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의견을 계속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과제하고는 별개지만, 장병들의 급식이 획기적으로 먹는 게 향상돼야 되는데 군에 가면 예전보다 많이 향상됐다고 군지휘관들이 자족하면서 맨날 설명하는데 저는 아주 우리 국민 수준에 안 맞다고 봐요.

실제 장병들이 급식이 좋아지려면 메뉴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군에서는 메뉴 선택권이 없잖아요. 주는 것 먹잖아, 그냥. 차관님, 주말에 식사 메뉴 선택해서 먹잖아요.

오늘 저녁에 뭐 드실 거예요? 그냥 주는 것 먹지 않잖아요. 식당 가도 메뉴를…… 하다못해 중화요리집 가더라도 자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탕수육 먹을까 선택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물론 수십 가지를 선택하라는 건 아닌데 최소한 두세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요. 휴일 날 같은 때 비 오고 하면 라면이 당길 수 있고 그러면 라면 먹고 그렇게 되잖아요, 실제.

그런데 우리 장병들에게는 메뉴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뉴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높인다 해도 그것은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

면 장병들의 식성이 다 다르고 그날그날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미군들은 메뉴 선택권이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김병주 왜냐하면 뷔페식으로 하되 주 메뉴는 한 세 가지를 하거든요. 주 메뉴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한 세 가지 정도 해서,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식당에 갔을 때 주 메뉴가 한 서너 가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연구해 보니까, 지금 우리 일일 식비가 얼마지요? 1만 2000원인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1만 3000원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1만 3000원까지 올렸는데 제가 2년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미군들은 한 1만 8000원이었고 우리가 1만 1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때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미군들은 메뉴 선택권을 갖게, 1만 8000원이면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올라갔겠지요. 한 2만 원 이상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달성이 되어야만이 사회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군간부들의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군수국장님 여기 계시지요? 맨날 가면, 우리 의원들도 국정감사 때 가서 병식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좋아졌다고 자랑만 하고 있어, 메뉴 선택권도 없으면서. 메뉴 선택권을 가졌을 때 장병들이 우리 사회의 수준과 일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요구하고 해야만 되는 거고요. 우리 국회에도 그걸 자꾸 요구를 하세요. 뭘 말인지 알겠지요? 지금 아마 내년 예산도 심의해 보면 그것이 어려워지는 거지요. 겨우 올려 봤자 약간 올린 그런 수준인데 조금 더 획기적으로 바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주 소규모인 데는 메뉴 선택권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솔직히 집에서 아침에 저하고 아들하고 메뉴 달라요. 엄마가 같이 해 놔도 지가 원하면 하나 더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아니면 마음에 안들면 라면 끓여서 먹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부대의견에 그런 내용도 포함을 시켜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8번과 9번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10번은 시정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과제들, 11번부터 12번 합해서 전문위원 의견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번, 12번은 장병의 피복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 사업은 기본피복사업의 연례적인 이·전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본피복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22~24년까지는 감액 조정하다가 25년에는 이례적으로 132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집행률이 100%를 초과하는 등 편성과 집행의 괴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능성방한복(상의)의 경우에는 단가와 물량의 변경이 있었고 기능성 전투우의의 경우에도 물량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초의 조달단가 예측이 크게 빗나감에 따라 기능성방한복 상·하의 수량의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기능성전투우

의의 보급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피복류 조달단가 예측 정밀도를 높이고 세사업별 소요를 면밀히 산정하여 연례적인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력 지원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번 사항은 특수피복사업의 면밀한 시행계획 수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피복사업의 최근 4년간 집행 현황을 보면 22년부터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조정(감)하였고 특히 25년에 예산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269억 원을 조정(감)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현황을 보면 방한피복류 중 매복갈개 및 무릎덮개는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고 방한화, 방한장갑 등은 축소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의 미흡한 수립으로 인하여 방한피복류가 집행되지 못하거나 축소 집행되었고 예산 조정에 있어 사업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특수피복 품목별 노후 교체 소요와 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례적인 예산 감액 조정과 품목별 미집행의 재발을 방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강선영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유용원 위원님은 시정을, 천하람 위원님은 주의를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11번,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2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왜 주의를 요구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 부분이 소요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품목별 소요 예측이나 예산편성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면 이 일 치율을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촉구하는 측면에서 주의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11번은 제도개선 수용, 12번은 주의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3·14·15·16번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보고드리겠습니다.

13번부터 16번까지는 지휘통신 등 정보통신 관련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군 지휘통신장비의 보안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육군은 2025년 노후 화상회의 장비 교체를 위하여 86개 부대에 각각 11개 품목을 도입하였습시다만 이중 코텍 등 2개 품목은 보안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 외국 제조사 제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행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평가 항목에는 보안 위해 가능성이 있는 외산 지휘통신장비 도입을 조달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군 지휘통신장비 도입 단계에서부터 보안 취약성이 우려되는 제품을 검토·제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및 내부 조달지침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강선영 위원님과 천하람 위원님은 시정을, 임종득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 사항은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의 과업 범위에 대한 설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은 당초 4만 8531FP 규모에서 계약 이후 국방부 요구에 따라 11만 7565FP로 2배 이상 확대되어 과업 범위 및 납품 기한 등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는 추가 과업에 대한 용역대금 및 미지급금 456억 원과 지연손해금 126억 원을 지급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는 정보화사업 계약 시 기능점수 산정 및 과업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계약 체결 이후에 과도한 과업 추가로 인한 분쟁 및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고 집행 절차가 준수되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 사항입니다.

물가정보관리체계의 데이터베이스 구매사업 등의 비목 편성 오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가정보관리체계는 물가정보, 공사비 및 관리비 등을 조회·공유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망 내의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업입니다. 물가정보관리체계 데이터베이스 구매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관리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관련 예산을 모두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차년도부터 물가정보관리체계 DB 구매 및 유지보수 사업 시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적정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천하람 위원은 주의를, 강선영 위원께서는 제도개선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16번입니다.

행사예산의 세부사업 간 혼용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5년 국방부는 우주안보, 사이버위킹그룹과 인공지능 발전 컨퍼런스 행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별도의 이·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세부사업 예산을 혼용하거나 당초 예산을 크게 초과하여 이·전용한 후 다른 세부사업의 재원까지 추가로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개최된 행사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사전에 면밀히 산정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세부사업의 재원을 임의로 혼용하거나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국방부 의견 얘기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13번은 수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립니다.

14번, 국방부 입장은 시정 수용입니다.

15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합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립니다.

16번, 국방부 입장은 주의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차관님, 많은 예산 중에서 국방정보화사업이 가장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여다보니까.

일단 13번, 군 지휘통신 도입 시 보안성 문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2025년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지만 보안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예링크(Yealink) 걸, 지금 육군이 26년에도 105대의 코텍 장비를 또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링크는 중국 기업이고요, 중국은 국가정보법 제7조에 의거해서 중국 기업은 정부나 정보기관이 안보 등을 이유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협조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예링크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보통신장비 조달 제한, 2019년에 국방수권법으로 발의됐고요. 2024년에도 미 오кла호마주에서 도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 다 아시겠지만 이게 백도어라든지 데이터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에 나옵니다. 알리바바는 하루에 세 번씩 클라우드에 암호화된 메시지 전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러한 예링크사의 코텍 장비를 어디다 사용하고 있느냐? 지휘관들이 회의하고 있는 영상회의시스템에 이 장비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은 우리가 보안, 2급·3급 비밀이 있을 때 출입도 제한하면서 보안장비를 운용하는 그런 장비에

이러한 중국 기업이, 그리고 이미 2019년에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조달 제한된 업체 걸 25년도에도 사용했고 26년도에도 이미 105대를 도입했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차관님, 이 부분을 제도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번 정보화사업 계약시 과업 범위 명확화는, 지금 군 정보체계 구축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평선 포인트(Function Point)가 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걸 잘못 계산해 가지고 583억 290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한 겁니다, 사업관리 부실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583억이라는 금액을, 국방부의 예산을 배상금으로 지원했지만 감사도 하지 않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25년 말에 이·전용을 하면서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열지 않고 조정했습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업관리 부실을 따져서 583억이라는 배상금을 지불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마이너하지만 15번 관리용역비로 집행해야 되는 물가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것,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이것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제 짧은 걸로도, 저희 사무실에서 국방예산 과목 구조를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하위사업, 목, 세목으로 다 나눠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용에 대한 건지 전용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 다 따져 보면 이 사업을 담당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고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지만 앞으로 계속 반복되면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6번은 제가 혼자 냈는데 행사예산의 세부사업 혼용집행 금지인데요. 국방부가 우주안보, 사이버위킹그룹, 인공지능 콘퍼런스 굉장히 과학기술이 첨단화되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예산을 초과해서 이·전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이·전용을 하면 기재부, 국방부의 예산운영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 이것도 분명히 담당자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다루지 않는 분들이 하는 실수로 생각하지 않고 이 국방정보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 눈여겨 보고 있다라고 차관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주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차관님 특히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13번 중국산 코텍 장비 관련해서는 내부 조달지침 자체를 아예 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4번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돌아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그때 당시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는 좀 부족할 때였는데 기업이

소송이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국고에 580억 원 정도를 손해를 끼친 건데 그런데 완전히 그것보다는 그의 산물은 군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16번도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잘 수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개선이 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박선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선원 위원 13번부터 즉 16번까지 의견에 대해서 강선영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13번 항 같은 경우는 시정으로 해 놓고 거기에 부기로 ‘지침 자체 개정하고 결과로 보고할 것’을 추가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감 해 보면 너무 낮아 가지고 시정하면 그냥 오늘 무사히 때웠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요. 다 시정하라 그래도 돌아가서 가지고는 오늘 그냥 예결을 쉽게 때웠어 하고 그게 자체평가로 나올 거예요. 다른 부서도, 부처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시정, 제도개선 중에 한 칸 내리냐, 올리냐는 문제가 안 되고 방금 강선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 정리가 되는 게 맞아요. 이것보다 사실 더 강한 질책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 뭐 하라고요? 시정……

○박선원 위원 ‘지침 자체를 스스로 개정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추가하라 이거지요.

○소위원장 김병주 제도개선이 제일 낮은 단계 아니에요?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요, 시정으로 넣고. 왜냐하면 제도개선 하면 대부분 안 해요. 시정으로 해도 안 할 텐데요. 그러니까 시정을 하되 무엇을 시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침 자체 개정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부기로 추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유영하 위원님, 이것 13번이 조금 충돌했는데 시정으로 하고 제도개선을 부수 의견 넣을 텐데 이 의견부터 좀 주시지요.

○柳榮夏 위원 그냥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위원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의견 주세요.

○柳榮夏 위원 차관님, 14번 갖고 제가 조금……

지금 금액도 금액인데 미지급금 해 갖고 456억의 지연손해금이 발생됐잖아요. 저는 군에도 법률 참모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정보사 잠수함 도입할 때 기술교범을 계약서에 부기를 안 해 가지고 결국 그 돈을 국가가 기업에다 그냥 쓰지 않을 돈을 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물론 왜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군은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담당자는 자기 면책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종심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시점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더 크게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차제에 이런 부분은 물론 본인의 면책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소송은요 전문가가 보면 이 소송이 이길지 질지가 대충 거의 나옵니다, 나오고. 정말 이런 소송이 금액대가 크면요 군에서 용역을 주시는데 거기다 법무 참모들, 법무관들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검토보고서를 보면요 이 소송을 해야 될지 이 소송을 안 해도 될

건지가 나오거든요. 또 소송의 승소에 대한 것도 예측이 거의 가능할 거고 아니면 민간 로펌에 해서 이런 소송이 있는데 우리가 응소를 해서 승소 가능성을 판단해 보면 그걸 로펌에 소위 말해서 타임 차지 주는 것의 몇백 배를 지금 지연손해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소송이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소송이 들어갔을 때는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게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각별히 조심 좀 해 주세요.

저는 볼 때 담당자들이 자기 면책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소송이 붙었다고 봅니다. 기록을 안 봐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건 앞으로 개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소송을 지연해 갖고 국고를 손실시키는, 저는 그게 더 나쁘다고 봐요. 일하고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이 의견을 제가 부대의견에 담지는 않겠지만 차관님께서 돌아가셔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15번 과제를 국방부가 제도개선 수용이었는데 강 위원님이 주의를 요구하신 거지요?

○박선원 위원 예, 주의로 저희 의견……

○강선영 위원 주의 하세요.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3번은 시정으로 하되 제도개선을 부수 될 할지를 좀 넣어 주시고요. 14번 시정 수용, 15번 주의 수용, 16번 주의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7·18번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17번부터 18번까지는 군 의료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장기군의원에게 지급하는 응급 진료업무보조비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임상 경험이 풍부한 장기군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응급 진료업무보조비는 예산 6억 4800만 원 중 3억 1300만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48.3%로 부진한 편입니다. 이는 관련 훈령이 25년 9월에 마련되어 25년 8월까지 집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응급진료 실적 촉진이라는 사업성고가 저조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응급 진료업무보조비의 사업성고를 제고하기 위한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번 사항은 의무장비획득사업의 낙찰차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구급차 및 진료장비 등 의무장비획득사업의 낙찰차액은 24년 27억에서 25년 38억으로 증가하였고 낙찰차액률 역시 1.2%p 증가하였습니다.

낙찰차액률이 증가한 원인은 장비별 조달예정단가를 최신 조달실적단가 추이보다 높게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낙찰차액률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25년도 낙찰차액과 조달취소 장비 예산을 합한 집행잔액 67억 6300만 원 중 49.2%인 33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의무장비 71대를 도입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낙찰차액을 감소를 위해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의무장비 획득 도입단가에 기술진보와 경쟁도 등에 따른 조달실적 단가변동추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천하람 위원님은 주의를, 강선영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17번 국방부 입장은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8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주의로 건의드리는데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건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낙찰차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의료장비들은 대부분 수입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 낙찰률이 낮아서 집행잔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과도하게 편성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의로 건의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17번에서……

○소위원장 김병주 예.

○柳榮夏 위원 차관님, 지금 군의 가장 큰 문제가 의무관 확보 아니겠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지금 제가 의료 협회장을 만났더니 군 복무기간을 무려 단축시켜 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의대생들이 갖고 있는 게 일반 사병으로 가서 근무하는 게 자기들이 장교로 복무하는 기간 2년을 빼면 나중에 사회 나와서 페이 면에서 엄청나게 차이 나니까 안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柳榮夏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이버 담당하는 군 요원이나 또는 의무관들, 특수병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봉급 체계나 성과급 체계를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규 자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원들이 조금 더 복무 연장을 해서 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경직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좋은 자원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의무조항들이 확보가 안 되면 아마 부모의 재산의 차이에 따라서 민간의료 위탁을 많이 시킬 겁니다, 앞으로 군에서. 그러면

있는 집 애들은 자기 부모들이 어떤 식으로든 민간 좋은 병원에 위탁을 시킬 거고 치료를 받게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결국 군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군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의료자원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안 들어오면 결국은 부모들이 나라를 믿고 군을 믿고 아이를 군에 보낼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군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식적으로 획일적인 평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차관님께서, 이걸 이 건과 크게 관계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기본적인 응급 진료 보조비를 세워 놓고도 불용 예산이 생긴다는 것은 군에서 그만큼 여기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환기시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17번 관련해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처음으로 작년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기준 마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시한이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 의무체계 관련해서는 군의관들에게 봉급을 민간 의사처럼 5억, 6억을 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군의관 복무기간을 좀 단축해서 의대 졸업하고 인턴 마치고 병사로 가는 일이 없도록 이게 공중보건의와도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와도 상의하고 있고 각종 의료단체들과도 상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트랙은 저희가 공공의대로 적정 포션을 받든가 아니면 이미 법이 통과돼 있는 국군의무사관학교 그 트랙을 하든가 해서 장기적인 군의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트랙 이게 동시에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榮夏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군에 법무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柳榮夏 위원 그분들이 법무관 시험을 볼고 의무복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柳榮夏 위원 그것 끝나고 나면 물론 쪽 가서 장성으로 진급하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 중간에 변호사를 개업하기 위해서 전역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거든요.

의무사관학교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의무복무기간이 지나면 장기복무보다는 본인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의사 개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페이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관님처럼 그렇게 국군사관학교 인력을 확보시키더라도 그들을 잡을 수 있는 메리트가 없으면, 시간 지나면 저는 똑같은 사태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랑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군의관이 굉장히 필요한 게 평시는 저희가 볼 때 그렇게 문제가…… 만약에 전시에 있을 때 군이 갖고 있는 게 총상에 대한 특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가 부족하면 그때 언제 민간 병원들을 차출시키겠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17번은 제도개선 수용, 18번은 주의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9·20·21·22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19번부터 22번까지는 각종 장비획득 및 유지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표준차량의 노후화 문제입니다.

표준차량은 정수 1만 9277대에 실제 보유는 1만 3894대로서 보유율은 72% 수준입니다. 이 중 수명 초과 노후차량은 11.2%의 노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형 표준차량은 기계식 차량으로 안전 및 편의 장치가 부재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고 작전 효율성도 낮은 차량입니다. 따라서 구형 표준차량의 교체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와 각군은 표준차량의 적정 정수 책정 등과 표준차량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형 표준차량 조기 교체 등을 통해 장비 안전 및 전투 지원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번 사항은 군수품 중 일반제품 구매 시 적격심사 기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장비 사업의 2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총 482건의 구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이 중 80%에 해당하는 385건이 고시금액(2.3억 원) 미만의 계약입니다.

군수품 중 일반제품 구매 시 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적격심사 기준과 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준이 각각 달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와 조달청의 각각 다른 적격심사 기준은 입찰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고 각 부대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로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에 대한 혼선 역시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군수품 중 일반제품 조달과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적격심사 기준을 정비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1번입니다.

자산취득 시 소요되는 부대경비에 예산편성의 오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나 수수료 등 부대경비는 자산취득비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자유지 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조달수수료 등을 업무대행수수료라는 대표계정과목명으로 물자유지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별로 예산을 운용하는 프로그램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와 각군은 조달수수료 등을 해당 사업의 자산취득비로 적정하게 편성·지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타 세부사업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번 사항은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 집행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방부와 각군은 외주정비용역인 경우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수리부속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로 집행하는 원칙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준수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이어 구매의 경우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 집행이 혼재하고 외주정비용역을 재료비로 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와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모두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와 각군은 외주정비 및 수리부속 구매 예산을 집행지침이 규정한 비목에 정확히 계상하여 집행하고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19번 표준차량 보유율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20번, 국방부 입장은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21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건의드립니다.

22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에서 시정·제도개선 2개 중에 했던 것, 시정·주의·제도개선 3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먼저 19번 표준차량 보유율 제고 관련해서 이걸 제도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재정당국과 최대한 예산 반영을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구형차량을 신형차량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도개선이 아닌 시정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21번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도 이걸 수용비로 할 게 아니라……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있는데, 그건 원래 자산취득비에 있는 일부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해야 되는데 별도의 수용비로 했다는 것은 지침이나 절차를 잘 몰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취지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 편성할 때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2개, 재료비나 시설유지장비를 각각 쓸 수 있는 것처럼 약간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시설장비유지로만 집행하도록 딱 통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로 이렇게 확실히 통제를, 지침을 잘 마련해서 하면 되겠다는 취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차관님 말씀하신 19번 사항에 동의합니다, 시정을 하겠다는. 예산 확보,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요. 예산 확보해서 구형차량 교체 주기를 좀 당기겠다는 말씀이 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차피 지금 4분의5t은 더 이상 신형으로 도입할……

○국방부차관 이두희 안 나옵니다.

○강선영 위원 안 되고. 2와2분의1t, 5t을 신형으로 바꾸는데 이 시기가 지금 현재 계획 로드맵보다 당겨서 하시게 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연차별로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될 되고 하는데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세상에 에어컨도 안 나오고 스틱 기어이고 주변 영상 어라운드뷰나 후진할 때 뒤에도 안 보이는 이런 차를 18개월 군 생활하는 어린 병사들이 산, 고지로 몰고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조기에 타개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의 절박함도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일반회계 항목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병과인 포병에서 아직도 1940년대에 도입한 포병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강선영 위원 김병주 위원장님이 여기 예산결산소위 위원장 하시는 동안 1940년대에 쓰는 포병들도 다 교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력과 연계해서, 특히 동원사단에 105mm 견인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성능 개량을 해서, 자주형으로 해서 자동화된 설비로 사기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차관님 말씀 중간에 ‘어린 병사’라 했는데 ‘젊은 병사’로 시정해 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시정하겠습니다.

에어컨도 안 되고 스틱 기어이고 전후방도 안 보이는 그런 큰 군용차량을 경험이 짧은 젊은 병사들이 운전하게 하는 것은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신형차량으로 개편,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그러면 19번은 시정 수용, 20번은 제도개선 수용, 21번은 주의 수용, 22번은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박선원 위원 저……

○소위원장 김병주 제가 얘기한 것에서 의견 변동이 있나요?

○박선원 위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지금……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박선원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시정요구유형은 누가 쓰신 거예요?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박선원 위원 위원님들이 내린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예.

○박선원 위원 예산과 관련한 법체계로 봤을 때 수석전문위원님이 시정요구유형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몇 번 사업에 대해서……

○박선원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솜방망이고…… 수석전문위원님이 보실 때는 약간의 위법성도 있을 거고 지침은 확실하게 위반한 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의견 표시했고 저는 못 했기 때문에 더 묻기는 뭇한데 객관적으로 우리 예산회계법, 지침, 절차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맞는 거예요? 시정·제도개선·주의, 이 정도로 끝내는 게 맞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일단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예비심사인데 예결위에서 다섯 가지 유형을 정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보시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이런 것은 징계 정도로 가는 겁니다.

○박선원 위원 여기에서 쪽 봤을 때는 징계는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예.

○박선원 위원 그런가요?

○소위원장 김병주 뒤에 나와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현재까지는 그런……

○박선원 위원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예.

○소위원장 김병주 뒤에 2개가……

○박선원 위원 저도 뒤에 봤어요. 다 털어서 쪽 봤는데 심각한 건 없다는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징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법률을 명시 위반한 경우에만 징계 요구……

○박선원 위원 그러면 시정은요? 시정은 어느 정도의 잘못이나 이거지요. 우리가 징계로 했을 때 시정이면 건책 정도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시정을 가지고……

○박선원 위원 징계할 때, 전혀 카테고리가 달라서 갑자기 이렇게 질문드리니까 좀 이상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징계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맞습니다.

○박선원 위원 건책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벼운 징계부터 무거운 징계까지 쪽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의 이걸로 비교를 해 보면……

대부분 시정에서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예.

○박선원 위원 징계로 하나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기관에서 이 정도면 징계 엄청 때리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안 넘어가거든요. 이게 국방부가 사업이 많고 건수도 많아서 봐주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로 해도 실제로 시정이 되던가요? 실제로 시

정이 되더라고요,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예.

○박선원 위원 시정이 되던가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저희가 시정요구를 하면 검토보고할 때, 다음 연도에 그 사항을 확인은 합니다.

○박선원 위원 확인을 해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이행 여부는 확인합니다.

○박선원 위원 실제로 시정이 돼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되는 경우도 거의 많고요 일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거기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가 다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박선원 위원 아니, 대부분 안 하고 넘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 뭐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 찾아내는 것도 가벼운 것만 찾아내잖아요. 별로 심각한 것 잘 안 찾아내잖아요, 심각한 것 찾아내면 문제 커지니까.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검토를……

○박선원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잣대가 무너지는 게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발견되는 부분을 일부러 완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진 않으세요? 전체적으로 너무 솜방망이야. 나는 집권 여당이니까 강선영 위원님하고 유명하 위원님이 이 정도로 해 줘서 고맙긴 한데 그냥 우리가 국방 운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국방을 운영해도 되는지.

○소위원장 김병주 국방 운영은 사실 되게 엄격해요, 다른 조직보다도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한 경험으로 봤을 때 진짜 바늘구멍도 안 들어갈 정도로 예산이 되게 경직되게, 규정에 맞게 하려고 국방부는 하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돼서 융통 있는 운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조직 같은 데는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체크해 보면 되게 폭을 넓게 하는데 국방부는 실제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요.

제가 포스타 할 때도 예산 조금만 이렇게 하려면 진짜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서 예산장교가 ‘노’하면 할 수가 없고 법무장교들이 ‘노’하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큰 틀에서 제가 봤을 때 강선영 위원님 너무 고마운데 가장 열심히 검토를 해 주셔서 제일 많은 항목을……

○강선영 위원 받았습시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강선영 위원 보좌관 누구예요? 아주 고마워요. 이렇게 꼼꼼하게 봐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예결위에서 우리한테 시정요구유형 분류 기준을 다섯 가지 정의를 내려서 요구된 게 있거든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선원 위원님의 우려사항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또 추호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산심의는 엄격히 해서 제대로 못한 것이 있으면 징계를 하고 실제 경고도 하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 취지는 저는 아주 200% 동의를 합니다.

○박선원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다음, 23번부터인가요? 몇 번이지요?

한 번 더 정리할까요?

19번, 시정 수용.

20번, 제도개선 수용.

21번, 주의 수용.

22번,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그러면 다음 23번부터 27번까지 전문위원님이 의견 주시고요.

아까 전문위원 설명하기 전에 참 제가 뻘었는데,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사항들이 있잖아요. 박선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기에 보면 시정요구유형은 위원들이 제기한 유형만 적어 났는데 전문위원 판단을 좀 넣을 필요가 있어요.

전문위원들은 여기 위원님들이 주장·요구한 시정, 제도개선, 충돌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이런 경우는 전문위원들은 예산에 전문성을 갖고 검토하니까 이 두 개 중에 전문위원 의견은 뭐다 하는 걸 해 줘야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산소위에 편성된 위원님들은 자기 거를 강선영 위원님처럼 충분히 설명도 하고 필요하면 수용도 하시잖아요. 제도개선인데 시정으로 바꾸겠다 이런 정부 측 의견을 하는데 여기 천하람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이 제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검토를 못 하고 있으니 전문위원님이 나중에는 이번 예결 심의에는 다 시간상 그러니까 내일 방사청하고 병무청 할 때는 그걸 좀 포함을 해서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예, 그렇게 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야 우리 예산소위가 판단이 훨씬 낮고 또 전문위원님이 계시는 존재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판단한 거를 더 객관화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거니까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위원장님,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판단하는 부분은 약간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 의견을 넣으세요. 왜냐하면 법안소위 할 때도 전문위원 의견이 정확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들이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충돌되는 경우, 주의·제도개선 이런 게 충돌되고 주장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돌되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판단이 있으면 훨씬 더 합리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지요.

오케이.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23번부터 27번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23번부터 27번까지는 인력양성 등 교육 및 훈련 관련 분야 사

업들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국방부가 실시한 해군 임관식 관련하여 예산집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방부는 해군 임관식에 필요한 영상장비를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4136만 원의 장비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임차료는 기본경비 사업에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임차료 부족분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계약대금 부족분을 다른 프로그램에 속한 간부양성교육 사업의 임차료에서 추가로 집행하였습니다.

하나의 계약을 임의로 분리하여 이를 서로 다른 두 사업을 통해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이·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예산집행 관련 규정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예산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번 사항은 M-MOOC 사업 관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6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M-MOOC 사업의 스튜디오 임차료 부족분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25년 말 다른 세부사업 집행잔액 등을 예산 변경한 후에 이월하여 26년도에 리스료 2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잔액을 예산 변경과 이월하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위반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이월한 집행잔액을 활용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통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25번 사항입니다.

첨단과학훈련장비 사업의 집행 부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년 첨단과학훈련장비의 집행률은 75.5%로 저조하였고 내역사업인 실기동모의교전장비의 집행률이 59.4%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가상모의훈련체계 구축의 집행률도 74% 수준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이 집행률이 가장 낮은 이유는 육군의 화생방 마일즈 장비 관련 사업 추진이 일시 중단되었고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의 목록화 작업 등이 지연되어 예산액 26억 원 수준이 잔액 불용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상모의 훈련체계 구축의 집행 부진 사유는 합성훈련환경 플랫폼 구축이 25년 9월 입찰공고 의뢰 후에 원가 검증에 약 2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되어 예산액 18억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와 육군은 첨단과학화훈련장비의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공고 및 원가 검증 소요 기간 등의 집행 지연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집행 점검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26번 사항입니다.

훈련장시설 사업 관련하여 사업 추진 절차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먼저 보시면 훈련장시설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2년·23년·24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5년에도 24년과 유사한 수준인 78.4%로 저조합니다. 특히 육군 개금 예비군훈련장 영내 실내사격장 등을 포함한 3개 사업은 집행률이 10% 이하로 매우 저조합니다.

집행 부진 사유를 보시면 공사비가 편성되었지만 종합심사낙찰제로 인한 지연과 설계지연·변경, 오염토양 식별 등으로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설계변경, 오염토양 식별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규모, 예산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및 추진 절차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27번 사항입니다.

과학화훈련체계 도입 일정을 고려한 시설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군 소부대 VR 과학화훈련장 개수 사업은 4개소입니다만 기존 건물을 개조하여 과학화훈련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만 예산 59억 6100만 원 중 10억 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6.9%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과학화훈련시설 내부에 설치될 과학화훈련체계 도입 사업이 26년부터 개시됨에도 시설공사를 먼저 계획하여 내부 시설 및 설비 제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예산을 대부분 이월하여 재정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과학화훈련체계 도입 일정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과학화훈련시설 개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23번, 국방부의 입장은 수용입니다.

24번, 국방부의 입장은 일부수용입니다, 일부수용이고 건의는 주의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박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좀 송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이게 국방

합동군사대학교에서 군무원·주무관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또 바로 집행을 금년 연초에, 3월 달에 이루어진 그런 정상 참작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5번, 국방부의 입장은 수용인데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건의드립니다.

26번, 국방부의 입장은 수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건의드립니다.

27번, 국방부의 입장은 시정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제가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양우 예산차장님, 합동군사대학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육군본부예산차장 우양우 합동군사대학은……

○소위원장 김병주 거기 와서 마이크 써서 하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부처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합동군사대 부처입니다. 교육훈련……

○강선영 위원 군사대학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방부정책기획관 우경석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 말은,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국방부에서 설명하러 많이 왔습니다. 기조실에서 노력했는데……

거기 이거 집행하는 사람이 8급 군무원이라 그러더라고요, 8급 군무원. 그렇지요?

○국방부정책기획관 우경석 6급 군무원입니다.

○강선영 위원 6급이에요?

○국방부정책기획관 우경석 예.

○강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사령관 할 때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이거 계약하고 이런 거 할 때 6급·8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휘관한테 또는 예산 담당하면서 그렇게 18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군사교육·대학교육 7800만 원, 병과교육 2억 2000만 원, 이렇게 3억 원의 재원을 스스로 막 여기저기 모아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이·전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국가재정법 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26년도 예산인데 25년도 사업을 사고이월로 임의로 처리한 국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그다음에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의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세 가지를 매우 심대하게 위반한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제가…… 저도 사실은 6급·8급이라고 막 얘기할 때 마음 아픕니다. 이거 징계받으면 엄청나게 개인한테 위협하고 또 그 개인이 고의로 다른 목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 알지만 이렇게 3억씩 이·전용한 거를 여기서 주의하지 마라 그러면 까짓것 지휘관이 하라면 주의 한 번 받고 또 한 3억 전용해서 쓰고 여기서 심의하려고 태운 위원들이 며칠씩 몇 날씩, 여기 수석전문위원들이 준비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고 이런 심의 절차를 너무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관님.

분명히 26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1800만 원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면, 이 사업이

K-MOOC 사업이라 매우 중요하면 그전에 기재부를 쫓아가서 이 사업이 꼭 더 편성돼야 된다고 노력을 더 했던가, 안 됐으면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그야말로 25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추가 경쟁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든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범을 위반하고 6급·8급 군무원들이…… 국방부에 근무하고 국직 부대면 국직부대를 통제하는 국방부 기조실은 어떻게 이런 거 통제 안 하고 3억씩 그렇게 이·전용하게 만든 겁니까?

기조실장님 나왔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예결위 전체회의에 가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 누구 나오셨어요?

○국방부정책기획관 우경석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선영 위원 정책기획관님, 우리가 예산 지휘관 할 때 500만 원, 1000만 원도 임의로 못 씁니다. 그러면 그걸 육군의 예산처라든지 각군 본부 예산처에서 통제 안 하고 국방부는 기조실의 통제를 받으니까 얼마나 부실하게 그동안 관리했으면 6급·8급 군무원들이 3억씩 이·전용을 마음대로 합니까?

이거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나면 저 예하부대 말단 가면 계급이 장군이라도 진짜 그 병 기본 훈련장 하나 돈 몇백만 원 들이면 고쳐야 될 그거 하나 못 합니다, 돈 없어서. 그렇게 끌어모은 예산을 가지고 병과교육, 합동군사대학교 교육, M-MOOC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다음에 해군예산차장님, 해군은 왜 해군 임관식의 경비를 프로그램 사업명이 명확히 다른데 기본경비 7111 사업을 간부양성교육 2431번 사업에 임의로 합쳐서 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예산차장님?

○해군본부예산차장 선철호 해군예산차장 선철호 대령입니다.

일단 본 사업은 예산이 2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일단 급한 행사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모자란 예산을 해당 부대에서 이·전용한 사업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 강화를 할 예정이고 지금 교육도 충분히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 각 군본부 양성교육 임관식 날짜가 긴급하게 팝업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군본부예산차장 선철호 아닙니다.

○강선영 위원 임관식은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정해져 있지요?

○해군본부예산차장 선철호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중요한 장비를 임차한 것도 아니고 음향이에요, 음향. 임관식 음향장비 이렇게 도입 안 하면 임관식 못 합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임관식은 어떻게 했어요, 그전 임관식은?

해군 예산 어떻게 쓰는지 제가 현역에 있을 때부터 잘 봤거든요. 해군은 주먹구구식이예요, 해병대도 마찬가지. 비교적 육군 꼼꼼히 보고 해군·공군·해병대, 지휘관이 원하면 여기저기서 막 끌어다 당겨 쓰지요. 해병대 작년에 병사들 소급비 다 빼 가지고 지휘관 운영비로 다 쓰고, 그렇게 하면 예산 편성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긴요한 곳에

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징계를 주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M-MOOC 사업이 합동군사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긴요 사업이나, 그다음에 해군 임관식 사업이, 해군사관후보생 임관식의 음향장비 임차하는 게 그렇게 긴요한 사업이나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맞으세요.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저는 각 군에서 긴요한 사업을 하는데 부득이 어려웠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그래 그럴 만했겠다, 먹고사는 문제, 훈련해야 되는 문제, 정말 병사들 막사가 막 비가 샌다든지 하면, 격별 보수비, 연간의 보수비 부족해서 썼습니까라고 하면 제가 말 안 하는데 이거는 지휘관한테 입맛에 맞는 그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늘 해 왔던 관행, 제가 볼 때는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국직부대들 예산 사용은 기초실이 너무 바빠서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예산 담당 군무원들이 지금 주물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기조실장님이 예결위 참여해서 못 왔다고 하는데 정책기획관님 가서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다른 것 보고……

○박선원 위원 왜 보류해? 징계해.

○강선영 위원 예, 징계로 저는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유명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기본적으로 강선영 위원님의 의견은 저는 맞다고 봐요. 다만 하나 짚을 게 있어요. 이게 과연 실무자한테 징계 책임을 물어야 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군은 누구보다 상명하복이 돼 있는 조직 아니겠어요? 이 6급 주무관이 자기한테 뭐가 있어서 이것을 예산 끌어다 댄니까, 위의 지침이 없는데? 만약에 징계를 물으려고 하면 처음에 지시했던 지휘관에 대해서 징계를 물어야 합당하다고 저는 봐요. 해군 임관식에 징계를 물으려면 총장한테 물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실무자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실무자가 총장이 지시하면 그걸 거부할, 누가 거부할, 여기 있는 장군들도 여기 지금 고위공무원들 있는데 장관이 지시하면 그 면전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 해요.

누가 과연 혜택을 보냐고, 혜택 보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6급 공무원이 이거 한다고 자기가 5급 승진합니까, 4급 승진을 합니까 아니면 성과급을 받아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물론 이 지시를 거부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 공무원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인 징계 요구에 대해서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걸 물으려면 차관님, 돌아가서 장관한테 보고하십시오. 이 사안이 어떻게 정확하게 발생됐는지, 이 지휘 보고는 어떻게 됐는지, 내부 결정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그 보고를 해서 가지고 저는 거기에 책임자가 나온다고 봐요. 가장 상위계급에 책임을 물으면 돼요.

여러분들 견장 찰 때 파란 견장 차지 않습니까. 그거 왜 차요? 전시에 즉결처분권을 주는 겁니다, 견장에. 대신에 부하에 대한 책임을 당신들이 지라는 거예요. 훈장은 자기가 받고 핏값은 부하가 지불해야 돼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징계 결정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게 아닙니다. 하려면 주무관에 대해

서 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이 결정 과정 다 감사하세요. 하셔 갖고 누구 때문에 이게 일어났는지 밝혀 가지고 거기에 합당되는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묻겠다 그러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M-MOOC 사업이 뭐지요?

○국방부정책기획관 우경석 M-MOOC 사업은 합동군사대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고 저희 간부들 주기적으로 원격교육을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께서, 실제 저희 각 부대에서 필수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지만 우리 군간부들이나 장병들의 정신전력이나 무형전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관련 사업은 그거에 관련되는 영상장비를 대여하는 대여료에 대해서 3억을 예산 요청을 했는데 그게 예산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1800만 원만 반영되다 보니까 해당 6급 주무관이 책임감에 의해서 사업을 12월에 집행하려다가 업체하고 이런 것들이 안 맞다 보니까 다음 해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올해부터 그래서 국직부대에 대한 예산점검을 위해서 제가 분기별로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 걱정한 집행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지금 말씀하신 분 직책이 뭐지요?

○국방부정책기획관 우경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M-MOOC 사업 같은 경우 군사대학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예하부대 교육용으로 나가는 사업이지요?

○국방부정책기획관 우경석 예, 네트워크로 해서 각 부대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네트워크로 해서 예하부대 장병들이 그걸 보고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매번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26년도 예산에 3억을 올렸는데 편성이 누락이 된 거지요, 빠진 거지요?

○국방부정책기획관 우경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26년도 교육이 안 되면 큰 차질이 생기니 거기 6급 주무관이 25년도 불용액, 그러니까 다른 사업의 예산 잔액을 여기저기 아마 수십 군데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변경을 해서 했고, 저는 그것까지는 문제없다고 봐요. 그게 작년 12월 달에 계약이 됐으면 전혀 문제가 없지요, 집행이. 그런데 아마 영상하는 장비업체 사정으로 12월에 계약이 못 되고 그다음 1월이나 2월 넘어오면서 계약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재정법에는 위반되는 거지요?

○국방부정책기획관 우경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12월에 계약이 됐다면 재정법 위반은 아닌 거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어떠세요? 군에서 이런 사례가 간혹 있거든요. 예산 반영이 안 됐을 때 예산불용액을 집행을 하는데 12월 그 해 집행해 버리면, 계약해서 집행해 버리면 위배가 안 되는데 업체의 사정으로 그게 넘어가다 보면 이게 재정법에 위배가 되는 그런 사례가……

○국방부정책기획관 우경석 회계연도 독립에 있어서는 위배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목적에는 약간 좀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목적 전용된 것이 좀 위배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국방부정책기획관 우경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걸 심의를 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은 군사대학 입장에서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실무자 입장에서도 교육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배한 소지가 여기저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일단 6급 공무원은 되게 열성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자기 업무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 사실 이런 예산을 국방부 차원에서 반영을 해 줘야지요, 3억을.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교육 한 해 안 되는 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지금 정리를 안 할 테니까 식사하고 다시 한번 국방부에서 파악을 해서 좀 이따가 오후에,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징계에 관계된 것은 하계 되면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 징계가 되는 억울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무조건 법적 잣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보류를 하고 나머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때가 다 돼서……

○柳榮夏 위원 이것만 하고 끝내시지요.

○소위원장 김병주 예, 23번은 주의 수용이고요. 24번은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리를. 25번은 주의 수용, 26번은 주의 수용, 27번은 시정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2시인데 오찬을 하고 2시에 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면 더 빨리 할까요, 1시 반이나?

○강선영 위원 2시 좋습니다.

○柳榮夏 위원 좀 늦게 하면 안 될까요? 한 30분 늦춰서……

○소위원장 김병주 2시에 하시지요, 통상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의결할 때는 의결정족수가 돼야 되니까 아마 4시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때는 꼭 와 주시고요.

그러면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국방부 소관 결산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 심사하기 전에 오전에 했던 24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월한 집행잔액을 활용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재발 방지 방안 강구 필요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렸는데, 강선영 위원님 추가적인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우경석 정책기획관님, 충분히 저한테 설명하려고 노력한 것 알거든요.

그런데 차관님도 계시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노고나 애로사항을 몰라서 징계라는 이것을 이렇게 명시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관행적으로 육해공군이라든지 그 예하부대는 예산의 소중함을 알고 그다음에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국직부대들 그다음에 일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대들이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게 군무원이 지시를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수석전문위원하고도 회의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이건 분명히 독립회계의 원칙 위반입니다. 25년도에 26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25년도 집행잔액을 사고이월시켜서 25년도에 계약을 해서 26년 3월에 집행한 건데 이것은 독립회계원칙에 위반한 게 확실합니다.

우양우 장군,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립니까?

○육군본부예산차장 우양우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대답 똑바로 하세요. 잘못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그렇지요?

그래서 제 말은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는 목적은 제 개인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회의 감독하에 편성하고 집행하라고 한 건데 이것을 편성되지 않은 예산……

그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데 18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다, 그것은 사실은 그 전 단계에서 국방부에서 잘못된 거지요. 계속사업이고 장병들의 원격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하면 기재부를 쫓아다니면서 그쪽에 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1800만 원밖에 편성 못 한 국방부 기초실이 문제 있는 것이고 편성 못 했다고 해서 전년도 사업을 그렇게 이월시키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오늘 이후에 기초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늘 이것 끝날 때까지 보류시키겠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기초실장이든 기획관이든 누구든 앞으로 이런 사업, 국방부 국직부대들 그다음에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부대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을 마련하든지 제도개선을 하든지 어떻게 관리 감독할지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차관님 의견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 깊이 새기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됐고,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24번은 끝날 때 정리할 테니까요, 회의 중간에라도 기초실장이 작성 간단히 해서 강선영 위원께 보고를 해 주세요.

28번·29번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이어서 28번과 29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인사정책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28번 사항은 실효성 있는 간부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간부확보장려사업은 크게 가산복무지원금과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은 25년도 집행률이 62.6%로 저조하였고,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집행률이 60.7%로 좀 부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 부진은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병과 초급간부 간에 상대적으로 보상 격차가 축소되고 복무기간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중·단기 간부에 대한 보수·수당의 합리적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자산형성 지원이나 주거개선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포함하는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번 사항은 장애인의 고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군무원과 공무직의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 이게 정원의 3.8%입니다. 이 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의 규모가 24년에 116억 원 수준에서 25년 146억 원 수준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24년에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국방부는 이 내용을 각 군 등에 하달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치 완료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고용의무 이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는 장애인 채용 실적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채용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28·29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28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립니다.

29번 국방부 입장은 시정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거기 28번 제도개선으로 건의하는 이유가 뭐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간부확보 성과제고 관련해서 이게 단순히 저희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될 부분이 아니라 처우개선 관련되는 전반적인 정책을 지금 여러 관계 기관들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급여체계라든지 처우개선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담아 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도개선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박선원 위원님이 빨리 진행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부사관 복지에 대한 거니까 한말씀은 꼭 남기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밑에 나오지만 장교와 부사관 간의 가

산복무에 대한 유인이 부사관이 되게 약하지 않습니까,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강선영 위원 그리고 아까 인건비에서도 봤지만 인건비도 지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부사관의 충원율이 낮는데 부사관의 충원율이 낮다는 것은 창끝 전투력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강선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부사관 충원율이 낮은 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산과 숫자 80%라고 얘기하지만 80%가 준다는 것은 결국 100으로 봤을 때 25% 이상의 업무 로드가 나머지 인원들한테 가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사관들이 계급도 낮고 병사들하고 대우도 별로 차이 없고 봉급도 차이 없고 이런 부분들을 이 하나의 확보장려사업에 국한하지 마시고 부사관 전체에 대한 대우·수당·복지·사기 큰 틀에서 그렇게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28번은 제도개선 수용, 29번 사업은 시정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만 하나 드릴게요.

○소위원장 김병주 예.

○박선원 위원 차관님, 부사관 복지 상승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집중적으로 작년부터 논의 많이 해 왔는데요. 올해는 어때요? 올해도 이렇게 불용액 많이 생기나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것이고 일단 부사관 지원율이 작년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고 올해도 여건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불용률도 좀 줄어든 겁니다.

○박선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아까 오찬 시간에 위원 매치(match) 식사를 했는데 차관님이 오전에 보니까 업무를 너무 과약을 잘하고 있더라는 칭찬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예산사업에 대해서 아주 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하면 뒤에 국장들이 답하기에 급급했는데 차관이 잘 모르셔서,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서로 칭찬이 있었다는 것 얘기합니다.

그러면 30번에서 34번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발표해 주세요. 내가 오전에 수석 자리를 빼고 전문위원이라 했는데 미안한데 수석전문위원 발표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30번부터 34번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시설 관련 내용입니다.

30번 사항은 해병대 병영생활관 사업의 집행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해병대 병영생활관 사업은 장병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적기에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집행이 부진합니다. 25년의 경우에 대관 협의의 진행이나 행정절차 추가 진행 또는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공사 지연 등이 주요 집행 부진 사유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해병대)는 해병대 병영생활관 사업의 대관 협의 지연 등 사업 지연 요인을 면밀히 관리하여 반복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번 사항은 병영기본지원시설의 집행 부진 내용입니다.

병영식당이나 급수시설,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등 사업은 25년도 예산현액이 2655억 원입니다. 이 중에 2144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80%로 다소 부진합니다. 25년의 경우에 병영식당 및 급수시설, 주요 시설에 상당한 규모의 이월·불용이 발생하였고 인허가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라 주요 집행 부진이 나타났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병영기본지원시설이 장병의 생활여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이월·불용 등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등 사업 추진 절차와 공사일정을 면밀히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GOP 소초의 여성시설 확충 사업이 집행 부진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GOP 지역 근무 여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5년 기준 GOP 소초에 여성화장실이 설치된 비율이 40.7%에 이르는 등 여성시설 확충이 아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GOP 지역 여성시설 확충 관련 개선 권고 이후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재조정 실시하였습시다만 연내 공사기간 확보가 어려워 25년에 집행률이 31.3%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국방부는 GOP 지역 근무 여군의 증가 추세 및 여성시설 설치 소요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반영하여 여성시설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3번 사항은 행정시설 및 전기시설 등 일반지원시설 사업의 추경예산 편성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5년도 국방부는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동 사업에 622억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시다만 추경에 포함된 일부 사업에서 사업 추진 방식이나 기존 예산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사업 추진 방식과 소요단가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고 기존 예산의 집행 실적 및 향후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34번 군 소음피해 보상사업 관련하여 인건비 교부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적사항 보시면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군 소음피해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63개 지자체에 인건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건비 교부액은 소음발생지역의 기준주민수를 기

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보상 건수, 민원 처리 등 실제 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기준주민수를 기본적인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유지하되 보상 건수나 민원 처리 실적 등 실제 업무량 관련 요소를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소음피해 보상사업 인건비 교부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30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건 의드립니다.

31번 국방부 입장은 시정 수용입니다.

32번 국방부 입장은 주의 수용입니다.

33번 국방부 입장은 주의 수용입니다.

34번 국방부 입장은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같은 것을 하고 보면 해병대 백령도라든지 6여단 쪽이 열악하고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상하수도시설 미비하다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해병대 많이 편성했는데 정작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편성해 줬는데 집행이 낮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비용을. 다른 곳에 썼다면 이것이 집행이 낮아졌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요구할 때도 합리적으로 요구하시고, 국방예산이 충분한데 나눠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했는데 필요긴급한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 차관님도 이것 막 국회에서 막 밀어준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군을 차별 없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GOP 여성시설 확충, 저는 여성이라서 여성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육군에서 안 계신데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현재 총장이 취임 이후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공간력이라는 겁니다.

우양우 장군, 맞지요?

○육군본부예산차장 우양우 예.

○강선영 위원 그래 가지고 공간력 때문에 일부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시설 사업을 총장의 관심 사업 공간력을 추진하느라고 이렇게, GOP 시설 이것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사업인데 이런 것 못 하는 것은 설마 아니지요?

○육군본부예산차장 우양우 예, 아닙니다.

○강선영 위원 왜 이렇게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군본부예산차장 우양우 여군 시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수가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GOP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착각이에요. 이게 미설치율이 47%인데 사업 집행률이 31%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선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 중에 GOP 지역 여성시설물을 모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왜 지연됐냐면 산지전용허가나 대관 협의나, 이게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반시설 자체를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민유지도 GOP 일대에 제법 있고 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FEBA 지역보다 공사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았는데 그제에로사항들이 열추 해소가 돼서 금년 중에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나머지는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런데……

○소위원장 김병주 박선원……

○박선원 위원 쟁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보니까, 아까 강선영 위원 창끝부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지휘부에서 멀어질수록 불용률이 높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무기 조달하라든지 아니면 총장 거리에 가까우면 집행률이 높을 텐데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병사들의 복지 내지는 그야말로 전투 대비태세하고도 직결되는 건데 여기에 제일 집행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차관님, 모세혈관에 피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 괴사 일어나서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 점을 차관님께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해병대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적극 담아 주셨고 저도 작년에 연평도 갔다 와서 적극 반영을 했는데 이게 도서지역 특성이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 보강공사도 있고 대관 협의도 안 되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고, 박선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심에서 멀어지면 규모도 소규모고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고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데일수록 더 간절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모아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사람도 기본적인 것이 거리가 멀면 마음이 멀어져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멀수록 지휘 관심을 더 배가하고 순찰도 더 많이 가고 사업도 더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멀리 있는 부대를 체크해 가면서 내가 적게 가지 않았나 해서 계속 일부러 더 많이 가고 했는데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30번 사업은 주의 수용이고요.

31번은 시정 수용.

32번 사업은 주의 수용.

33번 사업은 주의 수용.

34번 사업은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다음은 35번 사업에서부터 39번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의견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보고드리겠습니다.

35~43번까지가 예비전력관실 사업인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 끊어서 위원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35번부터 39번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사항입니다.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예비군훈련시설확보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예비군훈련시설 확보 사업은 당초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회계연도 중에 집행잔액 등을 활용해 신규로 추진한 사례가 총 46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에 미편성된 신규사업의 추진이 매년 반복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부는 국가재정법 등 재정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육군은 동원 분야 감사를 육군본부 감찰에서 하지 않고 동원참모부가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문제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강선영 위원님 제시하신 부분인데 총 6건입니다. 그래서 회의 전에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6건을 모아서 하나의 부대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육군은 동원참모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시설확보 사업, 급식지원 사업, 전투장구지원 사업, 동원훈련 사업 및 예비전력운영지원 사업 등 동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감찰실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감찰실에서 이 모든 걸 할 능력이 되나요? 물론 이것만 집중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강선우 위원님 의견은 동원 분야 이것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체감사 하면 봐주기식이 되고 발전 안 되니까 감찰실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해서…… 저는 감찰실 능력만 되면 아주 좋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감찰실 능력 자체가 이 정도 될지 의문이네요. 어떨까요?

이것은 육군본부 누구 오셨나요?

○육군본부예산차장 우양우 육군본부……

○소위원장 김병주 이쪽으로 와서 한번……

여기는 또 예산처니까 잘 모르겠네.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것 제가 전방 군단장까지 했으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군단급의 지역방위사단, 향토사단은 사단급까지 동원처에 동원예비군감사관이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군무원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 영역 안

에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감찰실에서 다 하려면 그 인력을 감찰실로 다 모아서 집권화해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력 총량은 그대로더라도 편성을 동원 조직이 아니라 감찰실로 옮겨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능력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또 주다 보면 부실 감사가 되기 때문에 이 안은 적절하긴 한데 능력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각 사단별로 감찰, 수사, 감사하는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또 모으면 자체감사가 안 되고, 늘 자체감사도 되고 이런 것도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제재 이상은 감찰실에서 하고 어떤 제재 이하는 동원참모부에서 한다면 그런 걸 해야지 전부 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감찰실에서 할 수 있는 제재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라’라고 이렇게 부대의견을 주면 어떨까요?

한번 의견 좀 주세요.

○강선영 위원 제가 이걸 지적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한 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6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총 35번부터 7건입니다.

제가 이 법 규정에 근거를 가지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7조에 보면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인데, 그래서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보장시키기 위해서 육군에는 감찰실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부대에 감찰장교를 별도로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원업무라는 게 되게 복잡합니다. 동원참모부에서 이 업무의 감찰을 하게 된 계기가 애초에 이게 국내에 있는 민간인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예비군은 신분이 민간인이고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동원참모부에서 관장해야 될 동원업무는 명확하게…… 각 수임군부대에서 관리하는 향토방위 중대장도 군무원이지만 민간인 신분이고요. 그다음에 관장하는 수임군부대가 향토사단 그다음에 동원사단 그다음에 동전사 예하에 육직부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예비군법 시행령, 국방부 감사에 대한 훈령, 동원예비군 감사 규정, 육본 업무분장 규정에…… 예비군법 시행령은 예비군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 참모총장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자체감사에 의해서는 동원 및 예비군 감사에 대한 예비군법 시행령을 근거로 각 군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각 군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 각 군에서 한대라고 하면 각 군에 감찰실이 있고 여기서 수행해야 되는데 별도로 동원 및 예비군 감사 규정에 뭐라고…… 육군 규정에 육본 감사는 육군본부에서 실시하는 동원 및 예비군 특별감사인데 이 중에 동원참모부장이 동원 및 예비군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해 놔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많아서 일수도 있지만 사실은 동원업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간인과 영역이 구분, 예비군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현역과 예비군에 걸쳐 있는 업무를 육군본부에서 하기가 매우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35~42번까지 7개의 규정에 보면 군에서 규정에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만 하도록 돼 있는데 800만 원을 편성한 다든지 아니면 예비군에 대한 식비라든지 여비에 대한 편성 문제라든지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이 동원참모부에 있는…… 참모부서는 감사기구

가 아니라 평상시에 참모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 때문입니까? 그런데 동원특기들이 다 합니다, 육군본부 동원 그다음에 국방부 동원국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단라든지 군단에 동원업무 하는 사람 한 명 및 두 명. 그들이 다 늘 알고 있는 업무의 영역,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잘못돼도 스스로 지적하고, 지적한 것이 개선도 안 되지만 지적도 못 해요, 잘 몰라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에 제한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감찰실을 보장하든지, 어쨌든 감사는 독립성이 보장되고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감찰실이라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디든지 독립된 동원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현업을 하면서…… 그러면 동참부에서 지침 주고 자기가 감사하는 겁니다. 동원업무를 자기가 지침 주고 가서 자기가 지침받은 걸 누가 지침 내렸느냐 하고 잘못돼도…… 본인이 지침 준 걸 본인이 책임지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주 위원장님이 군의 실태를 알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고. 이 기회에 이러한 육군본부 육군 규정에 의거해서 동원참모부장한테 감사하도록 돼 있는 이것은 상위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예비군법 시행령에 의해서 각 군 총장한테 줬으면 총장이 위임을 동참부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감찰실을 보장하든지 동원특기들을 집어넣든지 해서 독립된 감사를 해라 이런 의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감찰실에서 별도 TF를 구성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TF로 하면 병력을 좀 모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방법은 법적인 것과 또 실제 현장 상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렇게 부대의견을 넣어 주시고.

그러면……

○강선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간단히 말하면 35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46건이나…… 회계연도 중에 집행잔액으로 신규사업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을 46건이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운영경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을 초과해서 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 다 감사 지적사항인데 지적 안 받고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비군훈련장이 침구를 구매하면서 조달청에 의한 조달을 하지 않고 부대조달로 임의로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감사 안 받고 넘어온 겁니다. 집행을 낮은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원래 저희 국회에 오기 전에 이미 육군본부 또는 국방부 내에서 자체감사로 문제가 지적돼야 될 것이 걸러지지 않고 왔고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된다, 그래서 자체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하다가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 36번부터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다시 얘기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6번은 말씀하신 대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범위를 초과 집행한 부분은 주의 필요입니

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 등 운영비는 건당 5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직부대인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는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이행하지 않고 관서운영경비의 집행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군수품 조달 시 관련 훈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르면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품목은 조달청 위탁 대상입니다. 그런데 25회계연도에 육군은 예비군훈련장에 사용할 침구를 구매하면서 3000만 원을 초과한 44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부대조달을 통해 구매하여 동 훈령을 위반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군수품 조달 시 관련 훈령을 준수하여 조달청 조달과 부대조달을 엄격히 구분하여 집행하고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동원훈련 보상비 관련하여 인원 추계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은 25회계연도 집행률이 78.7%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이는 추정 동원훈련 참가 인원과 실제 훈련 참가 인원의 차이에서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는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 예산 추계 시 적정 규모의 예비군 훈련 계획 인원을 산정하여 예산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39번입니다.

동원훈련 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 예산 편성에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25회계연도 공공요금및제세 비목은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시다만 편성예산의 98% 수준인 2억 3400만 원을 타 사업에 충당하고 원래 목적으로는 300만 원을 집행하는데 불과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공공요금및제세 비목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합리성을 제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35번 국방부 입장은 시정 수용입니다.

36번 국방부 입장은 시정 수용입니다.

37번 국방부 입장 시정 수용입니다.

38번 국방부 입장은 주의 수용입니다.

39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을 합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39번에서 왜 주의로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시정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로 건의드린 이유는 예산 편성은 본 예산은 2억 3800만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우편요금입니다. 통지서 발송하는 우편요금인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모바일 메시지 등 SNS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되고 그걸 미수신했을 경우에 우편을 보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은 동일하게 2억 38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인지를 하고 내년부터는 현저히 낮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최소액 반영하는 것으로 이미 조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박선원 위원 차관님, 숫자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박선원 위원 작년에 이렇게 시정요구받고 돌아가서 가지고 각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조치는 각 소관 국·실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조치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공문을 어떻게 보냈는지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박선원 위원 차관님, 됐고요. 시정 몇 건, 주의 몇 건, 제도개선 몇 건 있고 해당 부서나 부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다가 실제로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당신들이 한 게 이러이러한 게 지적받았으니까 시정조치 하라, 시정조치 한 결과를 2개월이면 2개월 내로 국방차관실로 보고하라든지 아니면 예산 담당하는 기조실로 보고하라든지, 실제로 문서가 내려가서 문서가 올라온 것 있어요? 없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통보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보고받았는가.

○박선원 위원 확인해 주세요. 이것은 국방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국방부하고 국정원인데 저는 두 군데를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과성으로 때리면 때리고 맞으면 맞고 징계 한두 개 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제도개선·주의·시정 요구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결산 8월 말 잘 끝내고 떼웠다’ 하고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것을 보여 주세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예산편성권과 감시의 권한을 유지하고 정부가 나랏돈 제대로 쓰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시정하고 책임 있게 조치를 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작년엔 실제로 어떻게 각 부대에, 예를 들면 동원참모부에다가 된 지시를 했는지, 그래서 그쪽에서 시정조치 했다고 최종적으로 기초실로 보고가 와야 됩니까?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각 보고 취합이?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실별로 하고 있는데……

○박선원 위원 국·실별로 하더라도 총 종합을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 다루는 게 60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60건 각 해당 부처, 부서 정해 가지고 꼭 내려 보내 가지고 다시 시정한 결과 싹 취합해 가지고 그게 나와야지, 예를 들면 작년엔 8월 달에 한번 했을 것 아니에요? 결산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다음에 예산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중간에 이 결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이러이러한 점에 문제가 있었고 지적사항이다 해 가지고 국방부 본부에서 정확하게 각 부대로 내려가고 그것이 시정된 결과가 올라오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동원참모부 예비군 시설 이곳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몇 십 건씩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까 총 46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35번 같은 경우에? 금액의 다과로 봐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러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비행기 날갯값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예산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우리 국방예산이 전체 예산의 9.7% 차지하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더 요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산기획처에 ‘국방부가 이러이러한 게 더 필요하다고 하니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기획예산처에 뛰어다니지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시정이 요구가 되면 그 시정이 이행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발 방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아끼는 예산이 100억이든 500억이든 1000억이든 그렇게 해서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 항목이 모여서 큰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간단하게 이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게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예결위로 넘어가면 예결위에서 해서 의결이 돼서 저희한테 공식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해당되는 데 전파를 해서 후속조치를 해 갑니다.

절대 이게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결산심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했다는 결과만 주세요, 했다는 결과만.

○국방부차관 이두희 작년엔 했던 결과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국방부는 여기 내려가면 자체가 시정하고 수정하는데 그 전체적인 결과를 잘 정리해서 나중에 국방위에도 한번 보고해 주고 또 해당 박선원 위원께도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예산소위 끝나고 나서 작년에 예산 시정요구 한 것 중에 예결위에서 국방부에 요구한 게 하나 있어요. 국방부 자체감사를 하라는 게 있었는데 그 감사 결과를 오늘 보고할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런 것들은 하고 국회에서 정식으로 국방부에, 그 사업은 우리 국방위에서는 안 걸리겠는데 예결위에서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국방부에서 감사 끝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종결 지으려고 이따 보고하는 거거든요.

징계건이나 이런 건 하는데 지금 박선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시정·주의 이런 것은 안 할 수가 있다, 징계라든가 이런 건 명확하니까 결과 보고가 되는데 시정·주의·제도개선 이런 것들도 그냥 넘기지 말고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요구한 거니까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발전시켜 주면 신뢰가 가는 거니까, 아마 시정·주의·제도개선들은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걸 못 해 주니까 의구심이 있는 거지요.

징계하라, 자체감사나 이런 것들은 다 보고를 하던데 저도 계속 그런 요구 사항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소한 이런 것까지는 보고를 안 받았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전체 목록 리스트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데 그렇게 해 주면 좋지요, 사실은. 작년에 요구했던 과제가 몇 개고 시정했던 과제 몇 개, 제도개선 몇 개 했는데 지금 완료했다, 완료했다, 어떻게 했더라는 걸 간단히 보고해 주면 그런 신뢰가 쌓일 텐데 그걸 못 해 주니까 박선원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여쭙보고 싶은 게 연번 37번이에요 이게 조달계획 금액이 연간 3000만 원 이상인 품목은 조달처 위탁 대상인 게 명확한데 지금 문제되는 매트리스 이것은 3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것을 조달청 위탁으로 안 하고 부대 조달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혹시 급해서 부대에서 이렇게 한 건가 해서 봤더니 똑같은 품목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미 있고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3000만 원도 초과하고 시급성 요건이나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3000만 원을 왜 초과해서 이렇게 했는지 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일이 좀 흔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 부대가 잘 모르고 일탈행위를 한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예비전력정책관 김선봉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연한 것은 아니고 이 규정을 숙지 못한, 그래서 약간의 단가가 조금 차이는 났지만 거의 유사하긴 한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단가도 조달청 나라장터가 조금 더 싼 거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예비전력정책관 김선봉 예, 몇백 원 싼습니다.

○천하람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좀 숙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국방부예비전력정책관 김선봉 교육하고 강조하겠습니다. 공문도 내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번……

○소위원장 김병주 예.

○강선영 위원 예비전력정책관님, 제가 원래 질의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실무자가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부대가 사단인데—6사단—이래서 감사를 따로 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그런 규정을 모르니까, 계약하는데? 사단이면 어떻게 회계 단위가…… 어떤 부대예요?

우양우 장군, 사단급에는 회계관 없어요? 재무관 없어요?

○육군본부예산차장 우양우 있습니다.

○국방부예비전력정책관 김선봉 지출관, 출납공무원들 다 있고요. 저희들이 이게 만연했냐고 여쭙보셔서 그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독립성 있는 감사도 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각 사단에 있는 재무관들은 동원 같은 경우 계약 따로 하면 관심 안 가져요?

○육군본부예산차장 우양우 저희도 잘 지도하고 교육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35번 사업은 시정—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시고요—수용, 36번 사업은 시정 수용, 37번 사업은 시정 수용, 38번 사업은 주의 수용, 39번 사업은 주의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0번~43번 사업까지 수석전문위원이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계속해서 예비전력관실 사업 40번~43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0번입니다.

동원훈련 수송차량의 퇴소 시에도 음주 여부 측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는 입소 시에는 전원에 대해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퇴소 시에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음주감지기 구입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퇴소 시 집단수송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확인 사실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41번 사항입니다.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의 위탁운영비가 과소계상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방부는 6년 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원격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도 당초 예산안은 6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집행금액은 예산편성액의 10배 수준인 5억 9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소계상으로 발생한 예산액과 집행액 간의 상당한 규모의 괴리는 24년도에 이어 25년도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위탁사업 추진 시 실소요에 부합하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예산 조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42번 정책연구비 집행 관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최근 예비전력운영지원 사업의 일반연구비로 집행한 연구과제를 보면 특정 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정책연구비 성격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상 정책연구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목을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관리를 회피하고 정책연구과제를 우회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정책연구 성격의 과제는 정책연구비로 적정하게 편성·집행하고 정책연구비 성격의 과제에 대해서는 프리즘에 등록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43번입니다.

PC 리스 계약기간을 미리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예비군 부대 PC 및 모니터 리스 계약이 25년도 2분기에 마감될 상황임에도 25년도 예산을 12개월 기준으로 편성하여 2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6년도 예산편성도 계약기간이 빨라도 26년 8월에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12개월분 예산을 모두 편성해 올해도 예산 불용이 예상됩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국방부는 예비군부대 PC 리스 계약 사업 추진 시 실제 사용기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40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립니다.

41번 국방부 입장은 주의 수용입니다.

42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건의드립니다.

43번 국방부 입장은 시정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차관님, 아까 40번에서 시정요구, 제도개선과, 주의 중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게 병무청은 입소할 때 계약해서 병무청에서 기사에 대해서 음주 여부 등을 측정을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들어오는데 퇴소할 때는 국방부에서 그걸 안 한다는 건데 이걸 주의를 기울인다고보다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음주측정기도 다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42번 사업 관련해서 저는 시정을 요구했고 천하람 위원님께서 주의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42번을 시정을 해 달라고 한 건 시정에 대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정·회수·원상복구·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거든요. 지금 이 42번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예비전력운영지원 사업에 일반연구비로 집행한 연구과제가 실제로는 정책연구비의 성격으로 집행해야 되는 과제를 비교적 과제 선정과 관리가 용이한 일반연구비로 했기 때문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정책연구비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를 주시는 것보다는 향후에 예비전력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연구과제를 일반연구비로 하지 않고 정책연구비로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사업 추진방식의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것은 천하람 위원님은 또 주의를 요구하셨는데 천하람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천하람 위원 방금 강선영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시정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천하람 위원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정부 의견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희는 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 잘 만들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저희가 주의로 건의드렸던 것은 이미 지나간 걸 다시 어떻게 바로잡고 할 수는 없고 향후에 주의를 기울여서 프리즘에 의해서 등록되고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비로 이 사업을 잘 집행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주의로 건의드렸었던 겁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렇다면 집행된 것 이것은 시정이 되기는 어렵네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정책연구가 끝났고 비용도 다 지불이 된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주의가 타당할 것 같은데……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차관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는데 원래는 이게 중간 단계고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26년 사업도 이렇게 집행되고 있을 테니, 제가 내년에도 또 이걸 보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강선영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항목이 일반연구비가 아니고 정책연구비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하는데 지금은 주의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되면 시정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강선영 위원님 아주 날카롭게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러면 40번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40번 사업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41번 사업은 주의 수용이고 42번 사업은 주의 수용, 43번 사업은 시정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4번 사업에서 46번 사업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44번부터 46번, 책임운영기관 및 해외 파병 관련된 내용입니다.

44번은 국군수도병원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서운영경비 중 운영비는 5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국군수도병원 의무물자 구매 관련해서 보면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한 사례가 55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일반 의료소모품은 중앙조달 방식으로 공급받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군수도병원은 일반 의료소모품의 85% 수준을 수시구매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이 의무물자 구매 시 관서운영경비 지급 범위를 초과하여 분할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일반 의료소모품의 수시구매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조달체계를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45번입니다.

해군2수리창의 외주정비 계약 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겠습니다.

해군2수리창 사업 및 지원비 사업은 25년도 예산현액 35억 4300만 원 중 16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6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16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플로팅 도크 임차예산으로서 함정 수리를 위한 상가대 외주정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계약업체의 능력 부족으로 계약 해지 후 다른 제작사와 재계약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정확한 사업계획 및 집행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46번입니다.

해외 파병 관련된 세부사업 간 교차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사업과 PKO 파병 사업은 PKO 여부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업이 구분 관리되면서 유사한 사업의 집행을 위한 세부사업 간 예산의 조정이 있고 사업 간 교차 집행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사업과 PKO 파병 사업 간의 교차집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44번 시정 수용입니다. 45번 시정 수용입니다. 46번 주의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차관님, 군병원도 국직부대지 않습니까, 의무사 이하의?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강선영 위원 국직부대의 물자들은 쓰이는 곳이 군병원이지만 사실 일반사회에서 쓰이는 물건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말은 안 하겠지만 이 물자의 구매와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쓰는 게 김스, 부목이지 않습니까. 김스하는 것, 석회. 그러면 김스한 부목의 소모가 100개면 김스한 사람이 100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깁스 물품이 100개가 소모되면 깁스한 사람이 100명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강선영 위원 딱 떨어집니까, 그게?

○국방부차관 이두희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못 했는데 그렇게 물자 관리가 약간 허술합니다, 국직부대 병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관님이 잘 봐 달라는 거고.

혹시 다국적군하고 PKO 파병은, 다국적군 근거하고 PKO 파병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구분돼 있나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PKO는 유엔에서 요청해서 가는 것이고 다국적군은 아크부대나 청해부대처럼 우리 정부에서 가는데, 통상 군복 입은 사람들은 그냥 해외 파병이라고 통쳐서 얘기하는데 법적 근거가 다르고 예산 목도 좀 다른데 그게 혼용해서 집행한 게 있다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다국적군이다 그러면 유엔 결의안에 의해서 파병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해외 나갔다고 아크부대 거를 동명부대랑 섞어서 막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군의 예산집행 기준에 안 맞으니 만약에 이렇다면 아예 해외 파병으로 묶어서 쓰시든지 그런 것 아니라면 어차피 구분해 났으면 명확하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저도……

○소위원장 김병주 천 위원님.

○천하람 위원 국군수도병원 여기 보니까 너무 안일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관서운영경비로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르티솔 울트라라는, 이게 조직보충제인데 이것을 하루에 1476만 원어치를 사는데 500만 원 안 넘기려고 일부러 468만 원 3건으로 영수증 3개 끊고 또 72만 원으로 하나 끊어 가지고 영수증을 4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해당 규정을 다 형해화하면서 건당 500만 원으로 쪼개 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초과 건수를 보니까 22건, 24건, 9건 해 가지고 굉장히 자주 이런 일이 나오고 이게 액수도 꽤 커요. 이것은 진짜 너무 규정 위반해 가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작년에만, 그러니까 25년에만 이랬던 겁니까, 아니면 여기 국군수도병원은 항상 이런 식으로 관서운영경비 500만 원 남용해 왔던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도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보건국장이……

○국방부복지정책과장 김상호 과년도 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희도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행이었다면 아까 박선원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세포에서 떨어질수록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것은 차관님, 사실 예외 규정을 뒤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아요. 군단장 때 홍천병원 같은 것 운영했었잖아요, 차관님도.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김병주 실제 보면 관서운영비 500만 원은 일반 부대에서는 아주 큰 거고 그 이상, 이 이하로 하는 건 맞는데 병원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응급환자가 들어왔는데 약품이 없고 그러면 500만 원으로…… 이것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걸 쪼개서라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많고 병원 이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분야거든요, 응급환자.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단가하고 일반 관서운영비, 전방에서 쓰는 지휘관들 관서운영비는 사실 500만 원 정도가 일반 법에 맞는데 이것은 아마 법적인 예외 규정을 뒤야 될 사항일 확률이 많아요.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병주 한번 얘기를……

○柳榮夏 위원 차관님,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브레이크 타임 때 말씀을 드렸듯이 국회가 결산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적하는 건 저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피감기관에서 저희의 적절한 지적을 받아서 시정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다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이것 보니까 일반 관서운영비가 기준이 있다고는 치더라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서 이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는 이 규정만 그냥 형식적으로 딱딱 맞춰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예외 규정을 뒤서 융통성을 발휘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를 설득하든지 자료를 주실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지적한다고 해서 계속 수용하겠다, 수용하겠다, 시정하겠다 그러면……

지금 차관님도 그러셨잖아요, 담당 국장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걸 오기 전에 파악을 못 했으니까 돌아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만약 이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검토해서 애로사항을 바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차관은 장관을 대신해서, 전 60만 장병을 대표해서 여기 와 계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수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군의 특수성도 있다는 거지요. 그걸 자꾸만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그것 나중에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받아들이려 그래요, 자꾸?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병주 예, 천 위원님.

○천하람 위원 차관님,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말씀 다 타당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 건 같은 경우는 물론 병원의 특수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규제나 규정 개선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될 텐데 이 건은 저희가 조금 확인해 보니까 차관님, 이게 좀 이상하긴 한 게 왜 이것 5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했냐라고 저희가 조금 더 알아…… 이것 수석전문위원도 보시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최종 계약이 제대로 안 된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쪼개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면 사실은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 유찰이 되면 재공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안 하고 수의계약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우리 500만 원 언더로 쪼개 가지고 이것 하겠다 이것은 사실 좀 안 맞는 거거든요, 아무리 병원의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방금 김병주 위원장님이나 유영하 위원님 말씀처럼 특수성을 고려해서 다른 항목의 예산을 급히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있으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건은 그런 취지로 이해하기에도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늘상 있는 일인지, 제가 여쭙어보는 취지가 그런 겁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 분야는 아마 국방부가 지금 파악을 못 한 것 같으니까 국방부는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국방부가 시정 수용했으니까 시정으로 하되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병원에 뭔가 있었을 거예요.

병원은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 한데 군병원은 대부분 응급환자들이 많이 가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렵고요. 어떨 때는 갑자기 어떤 환자가 많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을 해서 가지고 이 규정에 예외 규정을 뒤야 될 것 같으면 과감히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병원 운영에 문제가 없게 해 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뭘 말인지 아시겠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위원장님 주신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렇게 하시지요.

○천하람 위원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그러면 44번 사업은 시정 수용, 45번 사업은 시정 수용, 46번 사업은 주의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47번에서 50번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47번부터 50번까지 정책 및 국방행정 분야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47번 사항은 42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소관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요. 다만 42번에서 시정요구유형을 조금 전에 주의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번입니다.

정책기획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는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말에 사업예산의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서는 총 6건의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이 중 2건이 11월에, 1건이 12월에 계약체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과제의 선정부터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의계약 및 연말 계약을 최소화하여 이월을 방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시정이 있습니다.

49번 사항은 해당 의원실에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49번 뭐라고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철회하셨습니다.

50번입니다.

군 배상금 관련 대규모 이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군 배상금은 2025년 예산현액은 1895억 수준이며 이 중 1794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반배상금의 이용 규모가 전년 대비 538억 원 급증한 이유는 과거사를 중심으로 과거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법원의 배상금 지급 선고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관련 소송 경과 및 피해자 수 추이 등을 분석하여 배상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대규모의 이용 재발을 방지하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47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수용합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주의가 되도록 건의드립니다. 48번 수용합니다. 다만 유형을 주의로 건의드립니다. 이미 훈령을 금년도 6월에 개정을 했고 그 개정된 훈령에 따라서 사업 방식을 적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번 지나가고, 50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아까 47번 주의를 앞에서 이미 정책연구 집행돼서 어렵다는 거고.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50번에서는 왜……

○국방부차관 이두희 50번은 이걸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배상금을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을 담아야 되는데 이게 통상 재정 당국과 저희 협의를 하다 보면 배상금액은 다른 데서 이·전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해서 담기 어려운 부분이, 저희 뜻대로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당국을 저희가 설득을 할 때 과거사라든지 이런저런 예상되는 배상금액이 있으면 그런 논리를 충분히 잘 설득해서 예산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차관님, 50번 국가배상금 있잖아요. 배상금이 점점 늘어난 거라고 보거든요. 오늘 신문도 보면 삼청교육대 그것 받은 것을 민주화운동으로 지정해 달라 이래 가지고, 아마 소송이 제가 보면 봇물처럼 터질 것 같아요.

물론 배상금이 이·전용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상액 책정 자체가 너무 낮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앞으로 기획예산처랑 협상을 하실 때 조금 더……

그러니까 예전같이 국가배상이 원활하지도 않고 인정되는 범위가 축소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거든요. 시대 상황 변환 것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배상금 자체를 잡아 주시고, 이것 나중에 안 돼서 불용 처리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전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너무 작게 잡지 마시고.

다만 군 당국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국가배상소송의 건수나 금액이나 이런 거를 저는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군에도 법무·법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의 승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잡아서 예산 당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런 것은.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과거사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를 저희가 핸들링할 수는 없고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충분히 담아야 되는데 편성액과 집행률이, 지금 거의 편성액의 1000%를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재정 당국과 협의를 더 강화해 가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병주 천 위원님.

○천하람 위원 49번이 철회가 돼서 그렇기는 한데 제가 그래도 이거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이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임종득 위원님께서 이것을 징계로 결산에 넣으시니까 자료를 제출하시고 해당 임종득 의원실에서 이것을 철회한 건데, 결산 하면서 징계하겠다고 넣으니까 자료제출하고 징계하겠다고 안 하면 자료 안 주고 이거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사실은 제가 뭐 몽니 부리자는 게 아니라 저희 의원실에서도 똑같이 넣어 댔는데 저희가 징계해 달라고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 자료요구라는 게 의원실에서 하더라도 결국은 위원회나 소위원회를 대신해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는 건데 임종득 의원실에 주실 수 있는 자료면 저희도 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한테도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양해해 주시면 법무관리관이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예.

○국방부법무관리관 이광표 법무관리관입니다.

임종득 의원실에서 최초로 요구를 했는데 내용이 좀 광범위해서 그 과정에서 양측 간의 협의가 있었고 조정된 자료를 주말에 제출했습니다. 천하람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시면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용된, 협의된 정도 수준에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 자료 제출 안 되다가 징계 요구하니까 되고 이런 일은 가능하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회계자료는 5년이 유효기간이잖아요. 5년 지나면 다 폐기가 되는데 5년 전 것을 요구해서 이것 자료 제공

못 한다 이렇게 답변한 거 아니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 부분은 저희 국방부장관 병역 관련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데……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80년대, 84년부터 85년 사이에 35사단에 있었던 사건 관련된 내용의 자료요구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그거는 회계, 예산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데 왜……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결산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그건 뭐 더 이상……

임종득 의원실에 제출을 했다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천하람 의원실에도 보고를 좀 해주세요, 다 같이.

○국방부법무관리관 이광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리고 사실 저도 국방부, 합참 이런 데 근무할 때 보면 어떤 때 국회가 좀 과도한 자료요구가 많거든요,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5년 지난 자료 이미 다 폐기됐는데 달라고 한다든가. 또 제출을 안 하면 자료제출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법정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유효기간 지난 것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그것이 현역 때 제일 고통스럽더라고요, 자료도 없는데 달라고 하니깐. 통상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국방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원실에 그런 규정과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세요, 그래서 오해함이 없이.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김병주 47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47년 사업은 주의 수용이고요. 48번은 주의 수용, 49번은 철회, 50번 사업은 주의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천하람 위원님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천하람 위원님하고 강선영 위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하고 결과물을 내 주셔서 소위 위원장으로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위 소위가 예산에 대한 심의가 아주 알차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유영하 위원님은 또 국방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전문가가 다 돼서 아주 전문적인 의견으로 심의를 해 주셔서 격조 높은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1년 사업에서 54년 사업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 제시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51년부터 54년까지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년입니다.

국방예산 확대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도 재원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국방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년 52조 원 수준에서 25년에 61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만 같은 기간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8%에서 오히려

2.30%로 감소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까지 향후 국방예산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요 분야에 대한 전략적 재원 배분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GDP 대비 3.5% 국방예산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장기 재정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국방예산의 전략적 재원배분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천하람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제출하고 계신데요. 이 내용은 사실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떨어지고 국방예산 전체의 방향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이 조금 적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52페이지입니다.

연말 국방비 미지급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25회계연도 말 국방예산에서 약 1조 3000억 규모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5002억 원으로 해당 금액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인 2026년 2월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연말 국고자금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월별 자금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말 자금 집행 집중으로 인한 미지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역시 천하람 위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적정 예산편성 등을 통한 이·전용 최소화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언급이 좀 됐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 예산액은 43조 5000억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6838억 원 정도가 이·전용되었고 4529억 원 정도가 내역변경 그리고 2269억 원 정도 규모의 세목 조정이 실시되었습니다.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전용액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적정 예산 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의 목적 범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요건을 준수하여 예산의 이·전용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54번 사항입니다.

용역계약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훈문화활동 사업에서 하고 있는 해군 창설 80주년 호국음악회라든가 해상방위경비 사업 또는 단기 국내외 시찰 사업들은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것 외에도 일반수용비나 임차료 등 예산으로 집행을 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용역계약 대금 집행 시 이를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등 그 비목을 정확히 하여 재정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51번 국방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52번 국방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53번 국방부 의견은 주의 수용입니다. 54번 국방부 의견은 주의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차관님, 앞서 제가 이거 순서를 일반회계 총괄을 미리 하는 바람에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4번 용역계약에 부합하는 비목, 이 사업은 앞서 제가 해군한테 얘기한 해군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음향음향장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쳐서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해군 창설 80주년 호국음악회 이게 21014 일반용역비, 21001 일반수용비, 임차료 21007 나뉘 가지고 다 쪼개서 썼고요. 국방부도 전투기량 경연대회 2025년 하면서 해상방위 기본경비 마찬가지로 나뉘 썼고요. 공군도 공군우수군무자 격려행사 하면서 210 사업비를 01, 07, 16, 22001, 24002.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재무관 하신 분들은. 이걸 이렇게 나뉘서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님 이거는 향후에는 이렇게 나뉘 쓰지 않고 목에 맞게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비목을 잘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행사를 할 때 목에 맞는 예산이 딱 없으면 자투리를 긁어서 쓰는 그런 관행처럼 돼 있는데 위원님 지적 잘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51번 사업은 제도개선에 부대의견을 포함하는 걸 수용했습니다. 52번은 주의에 부대의견 같이 첨부해서 수용합니다. 53번 사업은 주의 수용이고요. 54번 사업은 주의 수용입니다.

55~57번 사업까지 수석전문위원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55~57번 특별회계 소관 사업들입니다.

55번 사업은 토지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대는 25년도 예산액이 359억 원인데 수납액은 197억 원에 그쳐 수납률이 55% 수준입니다. 이는 24년 수납액 561억 대비해도 대폭 감소한 수준입니다. 501정보대 부지나 8군종교휴양소 부지는 정부 방침이 변경되거나 지자체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지금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토지매각 지연 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 지자체 및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6번 사항입니다.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정화사업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지별 정화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캠프 마켓,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모빌 등이 25년도 정화예산 대비 집행률이 60% 이하로 부진하였습니다. 기지별 집행 부진 사유로

는 철거승인 취소소송과 관계 지자체의 절차 지연, 결정이 번복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승인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방부는 기지별 집행 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관계 지자체 또는 정부기관과 절차 지연 해소를 하기 위한 협의를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조정 요청 시기 준수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다음 연도 완공예정 사업은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국방부는 25년도 완료사업 9개 중 8개에 대해 당해연도에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하였고 26년도 완료사업 5개 중 3개는 25년 5월 이후에 조정을 요청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요청 시기를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회 예산심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조정 요청 기한을 준수하고 당해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라는 내용입니다. 강선영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제시하셨고요. 천하람 위원님은 동일한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55번 국방부 입장,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56번 국방부 입장,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57번 국방부 입장, 제도개선·부대의견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55번 사업은 제도개선 수용, 56번 사업은 제도개선 수용, 57번 사업은 제도개선에 부대의견을 포함하는 수용입니다.

58~60번 사업까지 수석전문위원 의견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마지막으로 58~60번까지 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번입니다.

군인 연금기여금 수입 추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연금기여금 계획액은 24년도 1월과 2월의 기여금 납입평균인원 18만 5409명을 기준으로 7749억 원을 편성하였습시다만 실제 납입평균인원은 17만 9865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납액은 계획액 대비 346억 적은 7403억 원에 그쳐 그 오차율이 4.5%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금기여금 수입을 연례적으로 실제 수납액보다 과다하게 추계 편성함에 따라 부족한 수입을 기금적립금에서 충당하여 지출하고 있고 따라서 기금적립률이 22년 3.9개월에서 25년에는 최소 기준 3개월에도 미달하는 2.2개월로 하락하여 기금

의 재정건전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연금기여금 수입 등을 포함한 수입 및 지출 항목들에 대하여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은 추계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59번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관리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나래호텔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4년 객실 추가를 내용으로 한 설계변경이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늦은 25년 8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10월에 본공사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 역시 26년 1월로 지연되어 현재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각 군의 복지시설 사업이 향후 총사업비 변경 및 연도별 사업비 조정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군인복지기금운용지침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60번 사항입니다.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군간부에게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또는 월차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도 계획액 671억 원 중 475억 원을 집행하고 196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원세대 계획은 6293세대이나 실제 세대는 4731에 불과하여 계획 대비 1562세대가 미달해 군간부들의 주거 안정 도모 측면에서 성과가 저조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주기적으로 금리와 지원 인원 수 추이 및 주거 여건 등을 고려한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실적을 제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58번, 연금기금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건의드립니다.

59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립니다.

60번, 국방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柳榮夏 위원 차관님, 마지막 60번에 지원 기준이 어떻게 강화가 됐었어요? 처음에 했던 것하고 기준이 얼마나 강화됐길래 불용예산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일단 금리가 22년도에 3.75였던 것이 23년 6월에는 4.96, 12월에는 5.22%, 24년에는 5.18%,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줄 예산이 줄어들어서 기준을 부양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묶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리가 다시 떨어져서—지금은 4.26까지 떨어졌는데—저희가 예산이 전세자금으로 지원이 돼서 간부 복지에 기여해야 되는데 전세 기간이 통상 2년씩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풀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榮夏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차관님 말씀대로 금리가 상승되

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 한도 내에서 기존 기준 가지고 하면 지원이 다 될 수 없으니깐 기준을 강화시킨 건 좋은데 지나치게 기준을 강화시켜도 예산이 남아돌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산이 남아돌아서 불용처리하게 되면 결국 복지기금을 조성한 기본원칙에도 위배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너무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돈 다 쓰고 부족하면 그다음에 그걸 확충할 생각을 하셔야지 미리 알아서 줄여 놓으면 처음에 이 기금을 만들어서 했던 그 원 취지지도 몰각되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이런 거는 오히려 부족하면 예산을 설득을 시켜서……

제복 입은 군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 대한 복지가 조금 과해도 국민들이 그걸 갖고 시비 걸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연금이 일반 공무원 연금보다 많아도 저희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처음에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군에 대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고 왔으면 다 써도 시원치 않을 판국인데 그걸 미리 줄여 가지고 불용예산 만들면 그건 지휘부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시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알겠습니다. 간부 복지에 우선 중점을 두고, 방점을 더 두고 그렇게 운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차관님, 59번 그린나래 리모델링 사업 이거 공군 다 끝났나요?

○공군본부예산차장 김은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언제 완성이 돼요, 이거?

○공군본부예산차장 김은희 내년 4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지금 그린나래호텔은 못 쓰나요?

○공군본부예산차장 김은희 예, 현재는 영업 중지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리모델링하는 데?

○공군본부예산차장 김은희 공군 예산차장입니다.

24년에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원래 최초 계획은 올해 12월에 공사 완료 예정이었는데 일부 설계변경이 되면서 27년 4월까지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리모델링하면 그 주변 호텔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나요?

○공군본부예산차장 김은희 외관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업장으로 쓰던 그 구조를 객실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외관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할 때 좀…… 예전에 이걸 만들 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해운대 지역이 개발돼서 호텔 수준이 주변보다 상당히 낮거든요. 그 정도는 비슷하게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회의장으로 쓰고 연회장으로 썼던 걸 그냥 객실로 바꾸는 리모델링이네요.

○공군본부예산차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좀 더 투자해서 획기적으로 바꾸지 그랬어요. 맨날 군이 보면 조금 조금…… 우리 유영하 위원님 참 너무 훌륭한 말씀을 해 줬는데 이런 거 할 때 최소한 민간, 사회 수준에 맞추는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나아도 우리 국민들

이 수용한다는 것이 유명하 위원님 의견이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회 수준에도 맨날 못 미치게 하면 리모델링 하면 누구 가겠어요? 예전에 저도 한 10년 전에, 한 20년 전인가 거기 쓸 때는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는데 요새는 주변 호텔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거기 사용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휴양을 가더라도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줘야 되는데 군 복지가 맨날 사회 수준에 한 열 걸음 뒤쳐져 가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군인들이 매번 헌신이 몸에 배서 그런 거예요. 참고 헌신하라 이것이 몸에 배다 보니까 사회 수준과 비슷해도 미안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산 이런 걸 할 때 장병 복지에 대해서는 사회 수준보다 많이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한 일보 정도는 앞서게 해야 나중에 비슷한 수준으로 가니까 그렇게 하세요. 알았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국회에서 해 주겠다는데…… 오케이.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차관님, 연금기금 관련해서 재정건전성이 낮아지는 문제는, 군인들의 노후 아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공군 예산차장님, 그런나래 예약, 현역·예비역 예약하는 순위 옛날이랑 똑같습니까?

○공군본부예산차장 김은희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공군은 공군병사보다 육군장교가 더 밀인 거 아시지요, 순위?

○공군본부예산차장 김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순위가 낮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군이 자기네 돈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국방예산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 그래도 군대가 3군사관학교도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그런나래호텔, 해운대에서 가장 가까워서 좋은 호텔 시설 나쁘다는데 예약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 우선순위 보면 아마 공군장교, 부사관, 병 다음에 육군장교 될 걸요, 제가 알기로?

차관님, 복지 중에 제일 떨어지는 게 육군인 것 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강선영 위원 지금 로카우스 그것 기재부로 넘어가 가지고 연간 100억씩 이자는 내고 있는데 그 쓸 수 있는 시설에 결혼식 예식장도 어렵고 그다음에 거기서 묵을 수 있는 숙박비도 되게 나쁘고, 그다음에 누가 설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방감 없이 설계한 그런 시설인데, 대방동에 공군호텔 따로 있고 해군호텔 따로 있고 거기는 공군·해군이 쓸 수 있는데 로카우스는 더 이상 육군호텔…… 옛날의 육군회관 없어진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전세자금 말씀하시는데요. 유명하 위원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군인이 30년 군생활 하고 나오면 관사를 못 나가잖아요, 그 돈으로는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방부 부지에, 거기 지금 덕은지구로 해서 아파트 엄청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 군인 특별분양 있었나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아마 세대수에 일부 특공이 있지 않았……

○강선영 위원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거기가 군부지…… 국방대학교랑 그것 다 물려주고 논산으로 갔는데요. 국방부에 계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공무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

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육해공군, 해병대 군인들을 위한 기관이에요. 그러면 군인들 30년 군생활 하고 나면……

요새 주택정책 때문에 주소지 어디 없으면 거기 지역에 청약 못 넣잖아요. 그런데 저 30번 이사했어요. 가족 가진 인원들 그렇게 30번씩 이사하면 어떻게 서울지역에, 어느 지역에 3년씩 거주하면 청약을 넣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집·세 집 살림 한번 해 보세요, 이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고 교통비가 얼마나 많이 들고 가구를 운영하기 위한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런데 그런 군부지 넘겨줄 때 거기에 군인 특별분양해 줘야 되는데, 덕은지구 거기 엄청나게, 경기도지만 거의 상암동하고 맞붙어 있는 그 지역에 과거에 그 지역에 방송 KBS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결국 다 아파트 들어왔는데 군인 특별분양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세자금 그렇게 줘서 가난하게 만들지 마시고 군인들 특별분양 많이 해서 군인들 자가를 갖고 군대생활 하면 전후방 각지 돌아다니지만 10년, 15년, 20년, 30년 할 때는 내 자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제대할 수 있다. 박봉에 여건 어렵고, 정말 근무여건 어려워도, 진짜 서울의 한강벨트 30억짜리 집은 아니지만 어딘가에 내 집 하나는 마련할 만큼은 된다 그 정도로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국고 많이 집어넣는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원들은 들어가면 1%나 거의 이자 없이 다 대출해 주는데 왜 군인들은 전세자금을 5%씩 이렇게 줍니까? 지금 국고 저장해두는 농협이라든지 각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님, 제가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로 말하지 않고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실정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군대생활 하면서 느꼈던 억울함입니다. 우리 선배들 30년씩 군생활 한 사람들이 위약금 물면서 지금 동빙고 아파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금보다 위약금이 더 싸서. 위약금 물고, 30년 군생활 한 사람들이 진급도 안 났는데 제대도 못 하고, 제대를 했는데 군 아파트에서 퇴거도 못 하고 사는 실정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군대에 지원하지 부사관 누가 지원합니까? 봉급 적지, 전방에 격오지, 시설 나쁘지, 그다음에 대우 나쁘지…… 보장도 없는 군생활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관님 꼭 복지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강선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해군하고 공군, 해병대는 자체 회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선권을 자군에 주고, 육군 같은 경우 국방부 안에 육군회관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대통령실이 그리 들어가면서 없어졌잖아요, 육군회관?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다음에 밖에 새로 만든 로카우스 그것 제가 한 번도 이용을 안 해서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거기는 사실 아주 비싸고 육군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일반 호텔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요. 일반 호텔이라서 얼마 전에 육군총장 만났더니 행사할 데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리고 예전에 차라리 그것 짓기 전에 용사의집 있을

때는 병사들 진짜 저렴하게 하고 간부들도 저렴하게 해서 저도 전방에 있을 때, 대대장 연대장 때 서울에 오면 거기서 잤어요. 아주 저렴하게 1박 2일씩 출장 나오면 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육군들 그 많은 인원들이 출장 나와도 잘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국방부 차원에서 풀어 줘야 될 문제라고 봐요.

로카우스가 사실 육군회관이 돼야 되는데 왜 일반 호텔처럼 돼 버렸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게 캠프에서 지어서 30년간 캠프에서 그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하고 30년 이후에 소유권이 육군으로 완전히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때는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또.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서 국방 컨벤션이라도 육군에 주든가…… 전에 썼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해병대 회관 지어 주는 것은 해병대가 하도 우는 소리 하니까 4년 전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대선 공약이었어요, 해병대 회관 해 주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후보도 하셨고 그때 윤 쪽에서도 했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저 쪽 것을 전환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군은 크니까 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 해 주시고……

○황명선 위원 제가 올게요.

계룡대에다가 좀 하세요. 육해공군 본부가 다 있는데 복지시설하고 호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로카우스, 아까 용사의집 캠프가 주관하고 30년 후에 반환이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명선 위원 그러면 군인이나 군 퇴직한 분들이 이용할 수가 없네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4성급 일반 호텔이기 때문에 4성급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황명선 위원 아니, 그러면 뭐 하러 그 부지에다가 캠프에다가……

공사비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강선영 위원 그런데 공사비 이자는 100억씩 내고 있습니다, 육군이.

○황명선 위원 이것은 사업 방법을 굉장히 잘못했네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게 아마 당시에 재정당국에서 이것 승인 자체를 안 해 주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땅은 국방부고……

○국방부차관 이두희 육군 땅입니다.

○황명선 위원 육군 땅이고 사업은 캠프에서 하고……

○국방부차관 이두희 캠프에서 그걸 지원받아서 사업은 육군에서 진행했습니다.

○황명선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용사의집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빨리 계룡에 제대로 하나 만들어 보시지요.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서울에도 하나 있어야지요.

○소위원장 김병주 서울에 예를 들어서 육사 이전하면 그런 땅 있잖아요. 그런 것 확보해서……

○柳榮夏 위원 이젠 안 해도 땅 많습시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병주 많지.

그래서 육군도, 육해공군 다 서울에 있어야 행사를 하거든. 각종 행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전방에 있는 장병들이 서울에 나와서 잘 수 있게 하고…… 요새 물론 교통이 좋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서울에서 자야 되는 소요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 나오는 장병들 꽤 있잖아요, 간부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는데, 이것은 복지금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국방위 차원에서 얘기해서 아예 예산을 편성해 줘야 돼요, 이런 회관 지을 때는 복지금에서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일단 의결을 해야 되니까……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부대의견부터 얘기하시고……

○소위원장 김병주 부대의견?

○柳榮夏 위원 부대의견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58번 사업은 주의 수용으로, 59번은 제도개선 수용으로, 60번은 제도개선 수용으로, 그리고 오늘 나왔던 육군 회관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걸 좀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심사가 보류되었던 사업이 하나 있는데, 24번 사업 징계 관련 건인데 아까 강선영 위원님께서 보고를 해 주면 다시 의견을 내겠다 했는데, 강선영 위원님 의견 내 주세요.

○강선영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우경석 정책기획관이 저한테 한 장짜리를 갖고 왔는데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한 장짜리를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 내포돼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대의견으로 ‘국방부에서 낸 의견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국회 차원에서 감독하고 국방부는 시행 결과를 보고하겠다’라는 부대의견 넣는 데 이의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시정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조금 전 24번 사업은 시정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이 아주 덕이 있으셔서 여러분들 아껴서 양보를 하셨으니까 이것은 철저히 시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부대의견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지금 심사자료에는 61페이지에 기존의 3건이 나와 있고요. 방금 추가해 주신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 회관 문제 그것 하나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회의 초반에 정리하셨던,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원 분야의 감사 건 그것하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24번 관련된 부분 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문구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지금까지의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 조치 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 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에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방부 정책감사 결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자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국방위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 예결위에서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 자체 감사를 하도록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지난주에 보고 받고 위원장, 양당 간사한테 다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양당 간사와 위원장한테 보고할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예산소위에서 보고를 하고 종결 짓도록 위원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소위에서 그 관련 내용을 조금 이따 보고할 테니까 보고할 때는 관련 되신 분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을 하시고요, 이것은 조금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나머지 관련 없는 분들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앞으로 철저히 예산에 대해서 잘 집행하고 계획하고 오늘 의견들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가실 분 가셔도 돼요, 의결사항 아니니까. 듣고 싶은 위원님들은 좀 계셔도 되고요.

인사하고 가세요, 앞으로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인사하고.

아까 박선원 위원님께서 올해 토론된 심사 내용들이 꼭 시정돼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부 자체감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소위에 보고하는 걸로, 예산위원회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결산심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소형자폭드론 관련 정책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작년도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시 요구사항인 소형자폭드론 구매사업 관련한 감사결과입니다. 작년 9월 5일 예결특위 지적사항은 그 박스 안에 표시된 것처럼 예산에 미편성된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하라는 것인데 세부항목을 보시면 국방부에서 교육용탄약 예산을 3.86억에서 204억 원으로 증액을 해서 소형자폭드론을 구매한 내용입니다. 일종의 신규사업처럼 진행이 됐는데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했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내용이라는 의견을 예결특위에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구매했습니다. 그 그림에서 나오는 왼쪽 소형자폭드론은 300km 정도까지 가는 중형급인데 국내 대한항공 것이고 오른쪽 것은 폴란드 위메이트라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 30km 항속거리의 자폭드론입니다. 대수는 좌측 것은 30대, 우측 것은 110대를 구입했고, 여기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형자폭드론은 순수 국내에서 구매를 한 것이고 우측 것은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K-9이나 K-2 전차 같은 것을 수출하니 폴란드에서도 ‘우리 것도 사 주라’ 하는 대응구매 형태로 180대를 사서 육군 드론봇전투단과 드론작전사에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을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 문제점 되는 것을 1·2·3·4번 순으로 번호를 매겨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그대로, 임의로 편집·가공되지 않고 실무에서 감사를 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그대로 위당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번, 예산 사업조정과 전용 관련해서는 자폭드론의 성격을 교육용탄약으로 분류를 해서 교탄예산 120억 원을 전용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기편성된 교탄예산만 놓고 보면 4억에서 120억 원, 즉 3100%를 증액한 것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장비유지예산 85억 원을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소형자폭드론을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 목적도 국방부의 교육용탄약 예산을 신속 획득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감사결과를 냈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없던 신규 전력인 소형자폭드론 구매를 위한 예산 조정과 전용을 실시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감사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소형자폭드론을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했는데 이것은 폭발물, 탄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기체계로 기존에 인식을 하고 관리를 했고 특전사에도 그렇게 도입이 됐었는데 24년 2월에 소형자폭드론을 전력지원체계로—전력지원체계라 하면 비무기입니다—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견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 것은 신속, 빨리 획득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무기체계는 기획절차를 따르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을 쉽게 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감사의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유사한 기능과 용도의 군수품을 상황에 따라서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로 자의적으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결론적으로 무기체계로 분류돼 있는 소형자폭드론을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 것은 방위사업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 즉 무기 획득절차를 우회한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형자폭드론 I형 소요 제기와 결정과정인데 드론사에서 전력 보강 추진회의에서 다소 미흡한 게 있어서 소형자폭드론 I형의 성능 개량을 건의했는데 당시 국방부에서 연내 확보를 지시했고 드론사에서는 군사요구도를 좀 완화해서 특정 대상품목을 구매함에 따라서 동계에서 결빙이 생겨서 작전임무가 제한됐다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내 도입만을 목표로 해서 작전 요구 성능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도입했다는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형자폭드론 II형 수의계약, I형은 일반경쟁입찰을 했는데 II형은 폴란드 자폭드론, 즉 대응구매를 해 주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일반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여

기에는 여러 가지 써져 있는데, 폴란드에 대한 호혜적 차원의 대응구매 논의가 있었고 정책회의를 통해서 수의계약 형태로밖에 구입할 수 없다는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외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 여러 가지 절차가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등은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요건 부합 여부를 충분한 검토 없이 단기간 내에 검토·결정해서 과도하게 예산을 전용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좀 의문이 든다 하는 취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음, 시험평가와 수락검사는 정책회의에서 시험평가 방안을 사업 주관 기관이 설정·시행하도록 한다고 의결을 하였는데 드론사에서는 규정은 원래 실물에 의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와 다르게 자료에 의한 평가로 변경을 해서 군사용 적합으로 판정했는데 수락검사 하는 과정에 실패와 파손이 반복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결론으로 보시면 소형자폭드론을 드론사에 전력화해 주기 위해서 24년도 국방부에서 전력유지비 205억 원을 조정·전용했고 그 과정에서 무기를 비무기로 분류 또 군사요구도 완화와 시험평가 생략, 수의계약 체결 등 여러 가지 절차상 편법과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드론 도입이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국내에서 구매한 드론은 성능이 좀 불충분했고 군사요구도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국가재정상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감사의견입니다.

후속 조치입니다.

이미 조치한 것은, AI나 무인체계의 신속 도입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훈령은 우선 개정을 했습니다. 무기체계 획득 판단이 필요한 첨단장비의 경우에는 국방부 전력지원체계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전력지원체제로 구분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훈령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조치사항은 오늘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향후에 처분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차관님, 보고서 잘 봤습니다.

소형자폭드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감사결과는 아마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상황을 보고 잘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뭐가 빠졌다고 생각하냐면 과연 당시 왜 이렇게 급하게 소형자폭드론이 전력화되었어야 하느냐에 대한 상황 평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는 오물풍선이 있을 때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장님도 당시에 왜 오물풍선이 3000여 개가 떠서 MDL을 넘어서 남한으로 넘어오게 하느냐, 필요하다면 그것을 요격해서라도 떨어트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많았고요. 그러면 소형자폭드론의 목적이 과연 그 당시에 그러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하는 전력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급하게 시급성을 따지면서 전력지원체제로 바꾸면서 교육용탄약으로 전용하면서까지 만들었던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정치적으로 따질

수는 있으나, 저는 실제 이 사업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업을 한 사람들이 정치인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속도를 과하게 그다음에 부실하게 시험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ROC가 되지 않은…… 전력지원체계도 ROC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ROC에도 충족하지 않은 장비를 도입했다면 당시에는 충분히 그것을 도입해야 할 만한 상황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빠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 그런 상황 평가가 되지 않은 이것을 여기에서 평가하고 이것에 대한 국회에서의 조치를, 처분을 국회에 보고한다고 하면 또 이 처분을 받는 사람은 그 당시의 상황이 망각된 상태에서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한 결과에 대해서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미 그렇게 해서 처벌받을 만큼 다 처벌받았고 결국은 드론작전사령관이 불명예로 파면돼서 나갔습니다.

군에서의 책임은 뭐가 있습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 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 처분·조치를 국회 보고 후 국회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그것을 한, 지시를 받고 한 사람들을 상황이 지나고 그 상황이 끝난 다음에 다 하나하나 적발한다고 하면 여기 관련자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의견은 분명히 이것 때문에 드론작전사령관 파면돼서 나갔고 그와 같은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직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저 누군지 모릅니다. 사업한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경과는 확인하되 또 처분하겠다는 이렇게 예결소위에서 한다는 것은…… 많은 다른 국방위원님들도 안 계신 상태에서 ‘국회 보고 후 조치하겠다’ 이것보다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저는 어느 부분만 보고 싶다면 왜 사업을 이렇게 했느냐, 상황은 빼고, 왜 전력지원체제로 이렇게 교육탄약 예산으로 했느냐.

그다음에 날라 다니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피토크입니다. 피토크의 결빙 때문에 옛날에 공군참모총장님 부부가 3월 달에 사망하신 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UH-60 추락. 그만큼 날라 다니는 것에 있어서는 피토크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피토크는 열선 적용에서 삭제’, 결국 날라 다니는 것에 대한 장비의 기능을 소멸시키겠다는 거랑 똑같은 장비를 들여왔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작전성 평가 그다음에 ROC의 능력 평가, 예산집행의 타당성, 그 항목이 명확한가 정도만 따져야지 또 처분을 따지면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게 될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것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는 게 어떨까 그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잠깐만요. 제가 교통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2개의 갈래로 봐야 됩니다. 사실 소형자폭드론은 12·3 비상계엄 전의 북한 무인기 침투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별도 하나의 갈래고 또 하나의 갈래는 이것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절차를 뭘 어겼느냐 그리고 그것이 중대하냐 안 하냐, 징계 사항이냐 형사 사항이냐 그런 것을 따지는 거지요.

먼저 감사관님, 나와 계시지요?

○국방부감사관 김신숙 예,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제가 먼저 이것을 미리 보고받았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소위에서

결론을 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소위에서 보고를 하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야 국방부도 여기에 대해서 말끔히, 관련자 감사관도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 작년 국회 예결위에서 국방부 자체 감사를 하고 처리하라고 했는데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보다는 보고를 받는 게 오늘의 형식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고.

○柳榮夏 위원 들어 보지요.

○소위원장 김병주 잠깐만요. 조금 이따 기회를 줄게요.

12·3 비상계엄 전에 왜 평양 무인기 침투 있잖아요. 감사를 하면서 그거와 관련성이 발견된 거나 뭐 있습니까?

○국방부감사관 김신숙 오늘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은 소형자폭드론으로서 사실은 이 소형자폭드론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세상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사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아닙니다.

평양에 보낸 무인기의 공식 명칭은 소형정찰드론이고 소형정찰드론과 소형자폭드론은 처음에 ADD에서 일종의 쌍둥이드론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시작되었던 물건들입니다. 23년에 시작을 해서 소형정찰드론이라는 것이 먼저 드론사에 주어졌고 그다음에 24년에 소형자폭드론을 전력화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순서상 소형정찰드론이 먼저이고 24년에 소형자폭드론이 드론사에 가게 됩니다.

평양에 보냈던 무인기는 23년에 개발을 해서 먼저 주었던 소형정찰드론이고 그거에 대한 감사도 현재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혀 다른 소형자폭드론이지만 소형정찰드론은 먼저 받았기 때문에 24년에 작전에 이용을 하였고 소형자폭드론도 원래 목표 시한은 24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사정상 몇 달이 지연되면서 결국은 수락을 24년 12월에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 물건은 어디에도 아직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다음에 소형자폭드론 중에 2형 폴란드 거 있잖아요. 폴란드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도입 과정에서 그 당시 폴란드에 우리가 K9 자주포라든가 또 K2 전차며 엄청나게 방산 수출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폴란드에서 요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폴란드에서 135억을, 그것 사는 배경을 확인한 결과를 좀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감사관 김신숙 예, 맞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폴란드에 워낙 많은 수출을 했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사업이었고 쾌거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폴란드 내에서 여러가지 이행이 지연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 국내적으로도 우리도 뭔가 사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 소형자폭드론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드론사에 준다고 할 때 최초 목표가 24년 50대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0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다가 마지막에 6월경에 50대가 안 되고 그 업체에서 3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20대를 어디서 살까 할 때 마침 그런 얘기도 있으니 그러면 폴란드산을 사자 그러면서 등장한 것인데 20대가 필요하다, 드론사는 20대가 있으면 된다고 한 것이 7월을 거치면서 갑자기 180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도 135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필요성과 그 당시 상황은 충분히 인정은 되지만 수의계약으로까지 진행되고 이렇게 많은 수의 것을 하는데 일체 국회의 어떤 심의도 전혀 없었고 외부의 어떤 얘기도

없었고 그냥 국방부 내부 과정에서만 진행된 절차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아까 유영하 위원님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유영하 위원님 의견 하고 황명선 위원님.

○柳榮夏 위원 차관님, 저는 강선영 위원님 의견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요. 실무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는 명백하게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법령에 명백하게 위배됐을 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 특히 군은 상명하복 체제가 생명인 조직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이 자살폭탄드론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최고위층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고는 드론작전사 사령관 소장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타고 올라가면 아마 군통수권자의 얘기가 있든지 아니면 그 밑에서, 하여튼 군의 최고 고위층의 지시가 없이는 이렇게 급하게 도입이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의 책임자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랬으면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차관님이 지시한 것을 밑의 정책실장이나 부관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항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군의 속성상 못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시를 받아 수행한 사람을…… 감사관이 감사를 해서 이것 예산 전용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이런 예산 전용까지 나아갔을까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것을 처벌할 수 없는 게 법의 논리예요. 그래서 감사를 해서 밝히는 것은 맞지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물을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하급자의 책임을, 실무자의 책임을 이런 식으로 물어 버리면 앞으로 어느 누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게어요.

군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평시에 작전했던 것을 전시상태를 대비해서 했던 것을 갖고 전시가 안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물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시가 났을 때 대비 안 했으면 왜 대비 안 했냐고 따질 것 아니겠어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사를 해서 예산 전용한 부분에서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결정이 있어 가지고 실무자가 이게 일어날 때까지 그 과정은 충분히 살펴봐야 되고 그 변소를 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책임을 물을 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변소 내용을 감안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차관님께서 그런 뜻을 장관께 보고를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황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명선 위원 저는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봅니다. 감사관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 예산 사업에 대한 전용도 아주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지만 전력체계, 무기체계를 비무기체계로 해서 획득 절차를 피하려고 했던 이 꼼수, 굉장히 큰 범죄라고 봅니다. 있을 수 없지요. 이런 게 방산 비리예요.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의 획득하는 이런 절차가 굉장히 틀립니다. 이 절

차를 회피하려고 무기체계에서 비무기체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범죄 행위라고 보고 군사요구도도 낮추고 그리고 앞서서 감사관님께서 폴란드산 수의계약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시험평가 방식까지 바꾸고 실제 성능마저 아주 떨어지는, 부족했던 이런 사건이에요.

저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고 봐요. 예산 전용, 무기체계 분류 변경, 군사요구도 완화, 수의계약, 시험평가 변경, 성능 미달, 이 모든 게 아주 다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부적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도 하지만 정작 누가 왜 이런 결정을 지시했는지…… 감사관님, 누구예요?

○국방부감사관 김신숙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는 국방부 공무원과 군인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파악을 했고 저희가 파악한 문답서 중에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문답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상대방은 민간인이거나 퇴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황명선 위원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 얘기지요?

○국방부감사관 김신숙 예.

○황명선 위원 특정 업체와 제품이 어떤 경위로 선정됐는가 다 조사했습니까?

○국방부감사관 김신숙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내형, 즉 소형자폭드론 1형 같은 경우는 경쟁의 형식을 취해서 어떤 업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산은 처음부터 특정 업체로 특징이 된 상태에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 과정에서 외부, 윗선의 개입이나 이런 내용까지도 규명이 좀 됐어요?

○국방부감사관 김신숙 그것까지는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사실은 각각이 각자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크로스체크도 하고 공문서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지만 그분들의 주장도 크로스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에서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예산도 꼼꼼히 살피고 그리고 정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필요한 경우는 고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께서 우리한테 부여한 권한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방산과 관련돼서, 구매와 관련돼서 무기체계를 비무기체계로 획득 구조를, 이게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정황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들이 그냥 단순한 행정의 착오적 절차가 아니라 굉장히 큰 범죄적 혐의를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저는 이것은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발 조치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국방부 감사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와 이후 향후 고발 조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그게 정리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제가 필요하면 다른 형태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입장을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이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25년도 9월 5일 날 국회 예결특위 지적사항에 ‘예산에 미편성된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해서 이종배·임종득·조정훈·최기상 위원님께서 뭐라고 지적했냐면 ‘국방부는 소형자폭드론 구매 관련 과도한 예산 이·전용에 대해 자체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

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데, 과도한 예산 이·전용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이게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 이·전용에 대해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한 것이지 여기에 다른 목적까지를 포함해서 정책감사를 하면 우리가 예결소위에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국방부감사관 김신숙** 예, 위원님, 맞습니다. 과도한 예산 이·전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라고 했고 방금 유명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왜 이렇게 했느냐는 상황,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했는지라는 그 상황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과도한 예산 이·전용에 대해, 범위가 한정돼 있는 겁니다. 예산 이·전용에 대해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 고발 조치 말씀하시니까, 저는 예결소위인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감사 조치사항에 국회 보고 후 국회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국회 예결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국방부 소관으로 넘어온 이유를 일단 저는 모르겠고 이것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지적하신 분들이 예산 이·전용에 대해서 자체 정책감사를 해라, 이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명선 위원** 제가 강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이 사안이 예결소위에서 예산에 대한 전용 문제와 관련돼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인지 그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강선영 위원님의 지적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 전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무기체계에서 비무기체계로의 획득 체계를 전환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위에 대한 소명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까지 앞으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이 내용은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예산 전용과는 별개의 내용, 그것 플러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감사관님, 혹시 이 자료가 내란특검이나 종합특검에서 요구를 해서 제공된 자료가 있습니까?

○**국방부감사관 김신숙**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답변했듯이 특검에서는 소형자폭드론은 아예 모르고요. 소형정찰드론, 즉 평양 무인기에 대해서만 당시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때 검토를 했었고 저희는 이것을 감사하면서 평양 무인기는 별도로 특검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것은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해서 일절 보고 있지 않았는데 올해 3월 경에 국방위에서 평양 무인기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해서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래서 특검 쪽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여력이 안 돼서 저희 국방부에서 감사를 할 수 있으면 감사를 해 줘라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감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특검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던 게 어떤 것이지요?

○**국방부감사관 김신숙** 평양 무인기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평양에 나가 있는 무인기……

○**국방부감사관 김신숙** 그 무인기가 어떻게 해서 전력화되었는지 그 과정, 그것은 특검에서는 전혀……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평양에 보낸 것 그것에 대해서만 했지 그 물건이

어떻게 해서 드론사에 가게 됐는지는 전혀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그것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특검에 공유해 줬다?

○국방부감사관 김신숙 제출하지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은 자폭드론이고 평양 무인기는 정찰드론으로서 그것은 현재 국방부에서 내부 결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는 일절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제가 좀……

○소위원장 김병주 차관님 의견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소형 자폭드론 지금 2건을 저희 감사관이 별개의 2건을 같이 말씀드리어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보고드린 소형 자폭드론은 처음 출발은 작년 이 자리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정책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예결위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저희 국방부가 받기로는 예결위 의견으로 받았는데 작년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황명선 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고 하니까 이걸 소위에서 결론을 보고를 받고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이것 보고하는 전체회의에 회부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는 게 어떨까 싶네요.

○柳榮夏 위원 글썄요.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감사 결과를 그냥 받기만 하면 되지 그 이상 저희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는. 황 위원님 제가 존경하지만……

○황명선 위원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지난해 지적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 지금 감사관께서 획득체계에 대한 문제까지 지금 쪽 나오고 성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누가 개입했는지 문답까지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퇴직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에 대한 전용 가지고 지적을 해서 시작한 내용이 오늘 감사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 보니 굉장히 부적절한 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그냥 방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柳榮夏 위원 아니, 저희가 방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것 같으면 수사 대상이에요. 이걸 감사 대상이 아니고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차라리 국회에서 고발 조치를 하는 건 별론으로 따지더라도 지금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결소위에서 하는 것은 이런 정도로 저도 동의가 되는데……

○柳榮夏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가 계시니까 이걸 얘기를 해서 가지고 의견을 조율해서서 그래서 한번 전체회의에 회부를 하시든지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모든 게……

○황명선 위원 그렇지요.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결소위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요.

○소위원장 김병주 천하람 위원님 의견은 어떤가요?

○천하람 위원 지금 이게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보고하면서 국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걸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그냥 써 놓은 말씀인 것 같고 사실 이것은 약간 기본적으로는 보고하는 개념이니까 오늘 저의 의견, 어쨌든 이게 예산결산소위에서 시작된 거니까 이 정도로 보고받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판단 하셔서 양당 간사랑 국방위 전체에서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 더 보고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전체회의 보고사항은 여야 양당 간사 간의, 또 위원장의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원래는 오늘 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를 양당 간사나 위원장들이 보고받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위원장하고 이것은 간사들이나 위원장만 보고받아서 될 일은 아니고 예산소위 라도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주 전체회의 때 제가 보고하도록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보고받아 보니까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일단 여기서 전체회의에 회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을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 보고……

○황명선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서 감사를 감사원이 할 것인지 아니면 고발 조치를 할 것인지, 이렇게 엄중한 사안들을 보고 어떻게 그냥 보고만 받고 끝납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보고받고 끝내자는 게 아니잖아요.

○황명선 위원 양당 간사만, 그런 의견을 개진한 위원들도 있지만 저는 달라요. 아주 무기체계, 획득체계를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범죄행위란 말이에요. 그것을 국회의원이 묵 인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안 돼요.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소위에서 끝내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전체회의에 제가 봤을 때는 보고를 하고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방 안으로 하시지요. 그래서 전체회의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에 얘기를 나누 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황명선 위원 그리고요 감사관님,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대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감사관 김신숙 예,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소위원장 김병주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위원님들 한테는 보고했는데 전체회의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전체회의에 올라가더라도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오잖아 요. 회의에서 그냥 이렇게 한 몇 분 보고받고는 이 실체를 잘 모르니까 자세히 보고를 먼저 해 주시고, 시간이 있으니까 전체회의에서 또 논의를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 니다.

○강선영 위원 차관님, 국방부를 언제까지 감사, 조사, 징계 그런 것으로 만들 겁니까? 저는 차관님 그런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감사관님, 감사실장님이십니까?

○국방부감사관 김신숙 아닙니다. 감사관…… 국장입니다.

○강선영 위원 저는 무슨 생각하나 하면 지금은 정부도 바뀌었고 이미 전 정부에서 어떠한 경우는 처벌받을 만큼 처벌받았고요. 대령급 장성 46명 이상 파면됐으면 거의 한 조직이 와해된 상태인데 또 그것을 끌고가고 또 문제 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정부가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군대는데요 위기 시에 총칼을 들고 같이 적과 싸워야 됩니다. 그 총칼이 내부를 향하면 그 조직은 올바른 조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특히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저는 이걸 계속 감사를, 왜 아까 제가 징계를 주겠다는 것 시정으로 바꾸었겠습니까? 그것을 한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개인의 목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도입한 거 무기체계 전용했다고 하는데 전력 그런 예산 제가 방사청 예산 엄청 들여다보면 그런 것 없을까요? 저는 여기 황명선 위원님도 그런 마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입장이 특정한 다른 스크린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정말 군심을 결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 목적에 부합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은 특별한 걸로 정치적인 감사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국방부차관 인사말씀을 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국방부 예산을 사용한 결산 내역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겸허히 저희가 수용해서 올해, 금년도 예산집행도 더 탄탄하게 하고 내년에도 더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강선영 김병주 박선원 유영하 천하람 황명선

○출장 위원(1인)

성일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전문위원 문성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관 이두희

법무관리관 이광표

감사관 김신숙

기획관리관 오성식

계획예산관 양성태

정책기획관 우경석

국제정책관 김학조

방위정책관 최용삼

인사기획관 이인구

예비전력정책관 김선봉

보건복지관 성기욱

군사시설국장 천승현

군수관리국장 이갑수

국방정보화국장직무대리 조소영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정철재

육군본부

예산차장 우양우

해군본부

예산차장 선철호

공군본부

예산차장 김은희

해병대사령부

예산처장 유정규